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외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외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목 차 -

제1부 FTA 추진 배경	1
제1장 FTA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성장	1
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	2
2. 동북아 FTA 허브 구축	6
제2장 FTA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	11
1.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동시다발적 FTA 추진	11
2. FTA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 피해예상 산업 지원	17
제2부 FTA 추진 현황	20
제3장 발효중인 FTA	20
1. 한·칠레 FTA : 처음으로 추진한 FTA	20
2. 한·싱가포르 FTA : 아시아 권역에서의 FTA	28
3. 한·EFTA FTA : 유럽 경제권과의 FTA	32
제4장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	36
1. 한·미 FTA의 중요성 : 세계 최대시장과의 FTA	36
2. 협상경과 및 주요내용 : 준비에서 타결까지의 기록	41
제5장 협상이 진행중인 FTA	59
1.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59
2.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를 통한 FTA	66
제3부 주요 쟁점	68
제6장 대외협상과정의 쟁점: 한·미 FTA	68
1. 제조업 분야 : 시장개방의 핵심	68

2. 농업 분야 :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차이 조정	72
3. 서비스/투자 분야 : 개방폭과 속도의 조절	74
제7장 국내 갈등관계의 조정	85
1. 한·칠레 FTA : 낮은 경험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85
2. 한·미 FTA : 조직화된 반대에 대한 설득과 조정	96
제4부 향후 과제	113
제8장 FTA 추진과정에서의 교훈	113
제9장 남아있는 과제	116
1. 한·미 FTA의 성공적 발효를 위한 보완대책 추진	116
2.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20
【부록】	
1. FTA 개념	123
2. FTA별 추진일지	126

제 1 부 FTA 추진 배경

제 1 장 FTA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성장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싱가포르,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의 FTA를 발효시켰다. 또한, 2007년은 '자유무역협정의 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미 FTA 협상이 2007년 4월 2일 타결된 것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와의 협상이 2007년중 마무리 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5월7일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정부가 FTA 추진에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가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 추세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FTA라는 사실이다.

2006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3주년을 기념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쟁을 통한 성장, 즉 FTA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아 가는 과정을 보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갈 것은 다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은 분야는 결국 중국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따라잡게 됩니다.

○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배급해준다고 기업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장 환경을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열어줄 것이냐, 그 결정적 틀 안에서 보면 보호하는 속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제 열어서 경쟁에 노출시켜 성장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2006.2.26. 취임 3주년 출입기자단 북악산 산행 및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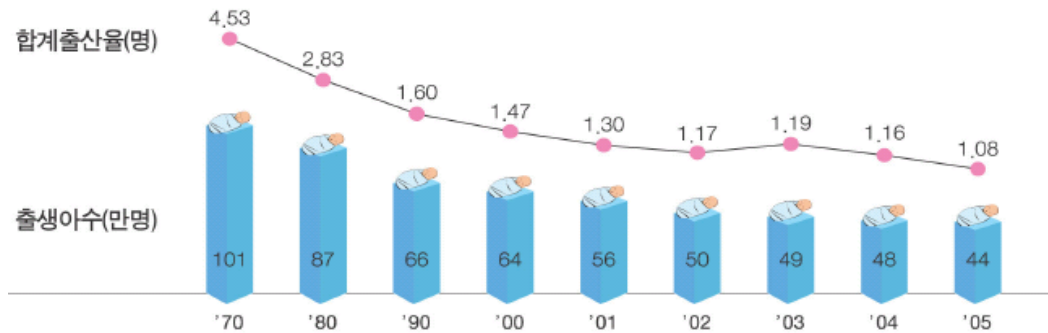
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

<FTA는 제2의 성장전략>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6~8%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하향세를 보여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4% 중반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의 대내적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의식·관행이 변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超)저출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에 따라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한 세대 내외에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저축률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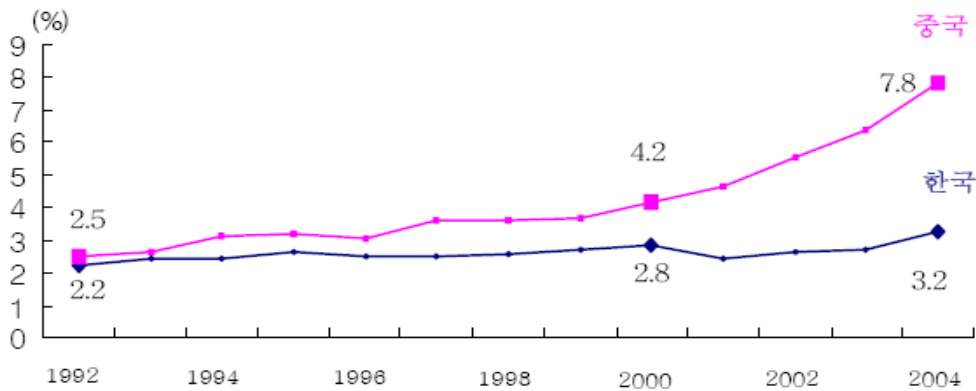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림 1-1 출산율 추이>

대외적으로도 우리 경제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간 교역 확대와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요 시장에서

의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BRICs로 대표되는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와의 경제적·기술적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반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시장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기회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중국은 이제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4년에는 2.5배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 리관유 전 수상은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앞으로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하게 될 것"이란 말로 압축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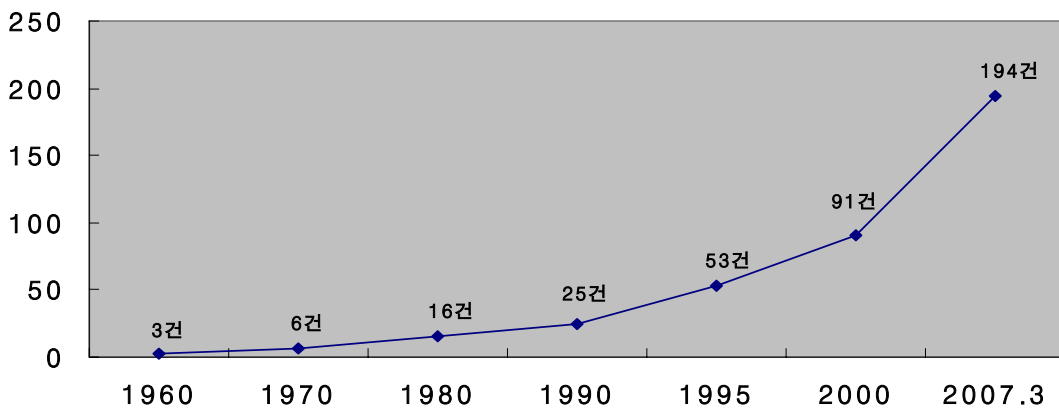
자료 : KDI, UN통계 재구성(2005)

<그림1-2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1992 ~ 2004)>

<우리나라는 FTA 지각생>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성장전략은 개방과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배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간·지역간 FTA, 특히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21세기 우리의 살 길을 여는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는 FTA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자간 협상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동북아 지역에서 구현하는 것은 지역내 국가들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WTO/DDA와 같은 다자 협정 역시 합의주체의 수가 많은 만큼 단시간내에 가시적 개방성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대안은 바로 FTA이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FTA 조류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FTA 광풍'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에 매달리고 있다. 2007.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194개에 달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8년 ~ 2000년까지 91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이후 103개가 체결되어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료 : WTO

<그림 1-3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누계)>

이러한 세계적인 FTA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전에 체결된 FTA가 하나도 없는 소위 'FTA 지각생'이었다. 본격적으로 FTA가 추진된 것은 참여정부가 출범된 이후이며, 2007년 4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과의 FTA가 발효중이고 미국과의 협상도 타결했지만 FTA 체결건수는 주요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상국과의 교역비중도 그다지 크지 못하다.

대외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앞장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FTA체결국간에는 관세인하 등으로 상호 무역이 증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체결국(역외국가)의 수출여건은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시키는 개가를 거두었지만, 만약 우리보다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했었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 고관세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우리 제품의 대미수출은 역내국가인 일본이나 중

국에 의해 상당부분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1 주요국별 FTA 교역비중 및 체결국가수〉

	싱가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칠레
FTA 교역비중 (‘05 발효기준, ‘03 실적)	53.7%	35.3%	19.6%	2.9%	0.5%	66.8%
FTA 체결국가수 (‘05 타결기준, 누계)	25개국	15개국	14개국	5개국	6개국	46개국

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와 FTA 체결
자료 : 무역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FTA 추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체결 추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고립 극복’의 차원이 아니라 통상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교역상대국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물류, 금융 및 IT, 문화 등 전반적 경제활동에 확산하여 개방경제하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며 ‘제2의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방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거듭 강조하였다.

◇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쇠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함께 해결하면서 나가야 한다. 역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 밖에 없다.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6.2.16. 대외경제위원회)

2. 동북아 FTA 허브 구축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¹⁾ 199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역내외 국가간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무역 장벽이 낮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주력했으며, 역내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은 국가간 경제발전 단계 및 소득 수준의 차이가 심한데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중국과 일본의 지역내 주도권 경쟁 등으로 지역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낮았던 것이 관심이 낮았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내 국가간 FTA 추진의 필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시장 위주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최초의 FTA를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멕시코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현재는 ASEAN 전체와의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2005년 7월 ASEAN과 상품무역협정을 발효시켰고, 2007년 7월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국가들(ASEAN+3)의 경우 2002년 11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아가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FTA 추진에 주목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는 동북아 지역통합의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인근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1) 1990년대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1990년에 출범한 AFTA(ASEAN Free Trade Area)가 유일한 것이다. 1967년 정치적 결사체로 출범한 ASEAN은 AFTA를 결성하면서 경제통합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AFT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경제적 비중이 크지 않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경쟁과 협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국토 균형발전과 활력 도모, 환경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창출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류, 금융, IT, 에너지, 환경 등에서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제도가 선진화되어야 하고, 대외 개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적, 물적 흐름이 자유롭지 않으면 경제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동북아시아 FTA 허브 구축>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간의 FTA 추진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일 FTA,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아세안 FTA 등 동아시아 국가간 FTA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현에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최근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은 일본, 중국과의 FTA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FTA로 통합된 '한국과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 국정토론회에서 지역통합과, 공존·평화와 번영의 질서 구축을 위한 동북아 시대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 동북아 시대 전략은 민족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 동북아 시대는 단지 경제를 발전시켜 잘 살자는 꿈이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지역통합과 공존의 질서,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간다는 꿈과 희망입니다. (2003.2.6. 인천 국정토론회)
- ◇ 동북아시대 전략의 개념을 점검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성장 비전으로 생각을 모아봅시다.
- 한국은 내부적인 기술혁신과 시스템 혁신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다. 이제는 대외적인 시장여건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망이 국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기업에 투자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003.2.19. 대한상의 간담회)

【참고】 FTA와 선진통상국가

2005년 4월, 참여정부는 우리경제의 세계적 위상과 발전정도, 세계경제의 변화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경제가 대외 부문에서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FTA 추진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선진통상국가로의 지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고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우리경제가 현재 대내외 여건상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대내적으로는 80년대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성장잠재력 위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고령화·양극화 등 선진국형 경제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민주화의 진전으로 통상문제 등을 둘러싼 집단간 이해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BRICs 등 후발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FTA, DDA 등 경제통합 추세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성으로 인한 기업활동 전체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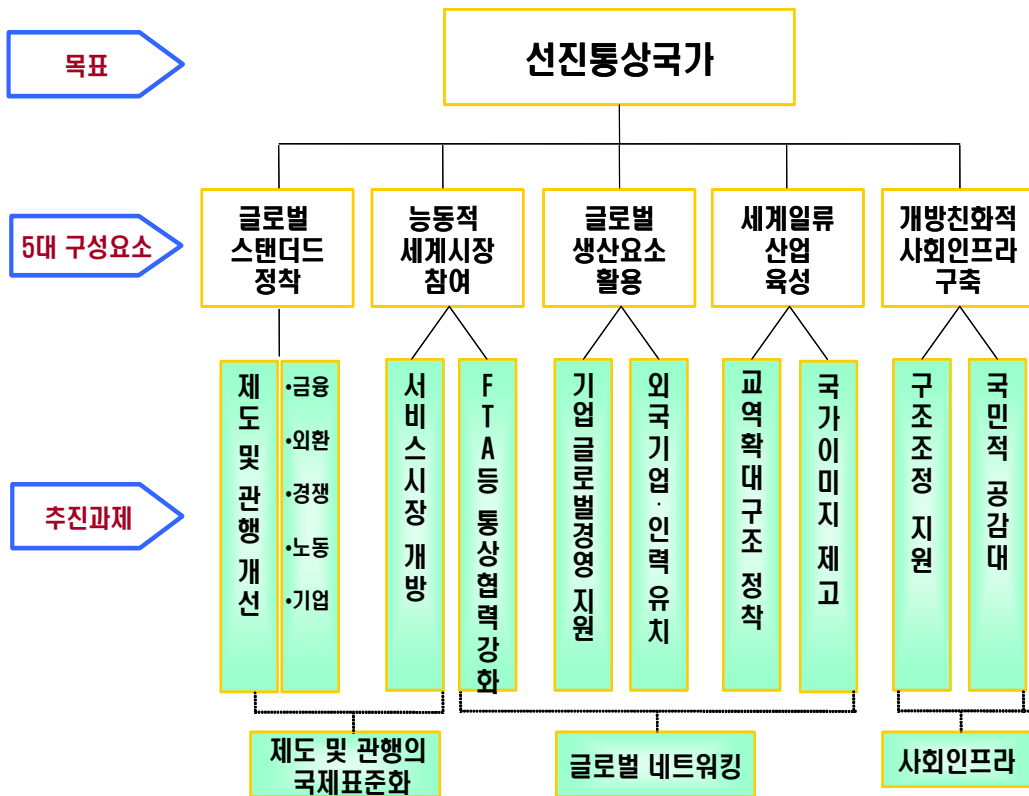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화의 충격을 대내경제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등 대외개방정책과 대내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선진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별 세부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통상국가란 노동·금융·경쟁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강한 서비스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보유하고 IT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투자하면서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가 형성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는 수동적인 개방불가피론을 탈피하고 선진국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창조하는 새로운 종합적 패러다임이다.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개방화·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통합, WTO를 통한 다자간 협정, FTA의 체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처럼 우리 스스로 개방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EU와 같은 경제통합 방식은 현재 동북아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WTO 다자간 협상은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 또한 싱가포르 같이 자발적으로 거의 모든 무역·투자장벽을 허무는 방식은 우리 여건상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양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는 서비스·투자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된 수준높은 FTA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은 선진통상국가 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비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단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가 보다 대외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며, 대외경제전략의 변천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속에서의 우리경제의 위상과 대외지향적인 구조적 체질을 고려할 때 FTA가 미래성공전략이며 희망적인 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 2 장 FTA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

1.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동시다발적 FTA 추진

가. 추진경과

<2003년 8월 로드맵 마련>

참여정부 출범이후 FTA 추진정책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3년 7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이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추진 기구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FTA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위원회 논의를 거쳐 FTA 추진 로드맵이 2003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동 로드맵은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1~2년)으로는 이들 거대·선진국가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 중 우선 협상 개시가 가능한 싱가포르, 아세안,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거대 국가와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04년 5월 로드맵 수정>

그 이후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로 지역주의 추세가 한층 심화되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FTA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는가 하면, 구주 및 미주지역에서도 지역 블록간 경제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첫번째 FTA인 칠레와의 FTA의 발효로 FTA 체결에 관한 국내적 환경이 보다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즉 2004년 4월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FTA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일정수준 높아졌으며, 추가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통상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FTA 추진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유망대상국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3년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였다.

2004년 로드맵은 이전에 중장기적 추진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캐나다와 인도를 단기 추진대상국에 포함시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FTA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내용측면에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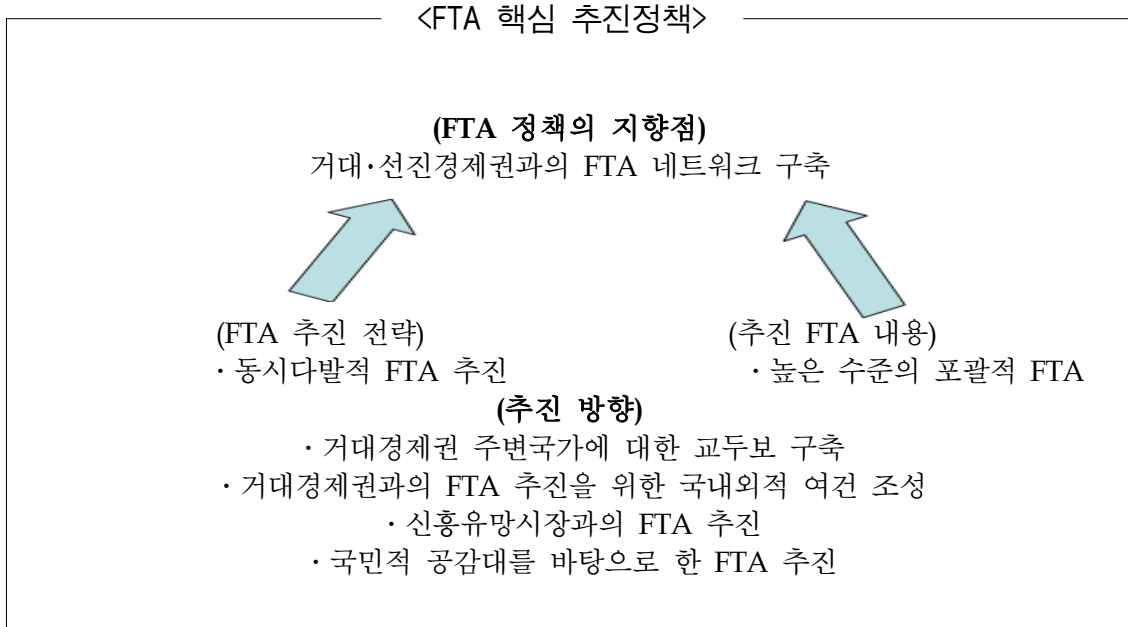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사와의 토론회에서 FTA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FTA 그거 왜 하나?’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 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

○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만일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6.9.28. MBC 특집 100분 토론)

나. 로드맵의 주요 내용



<최종목표는 미국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network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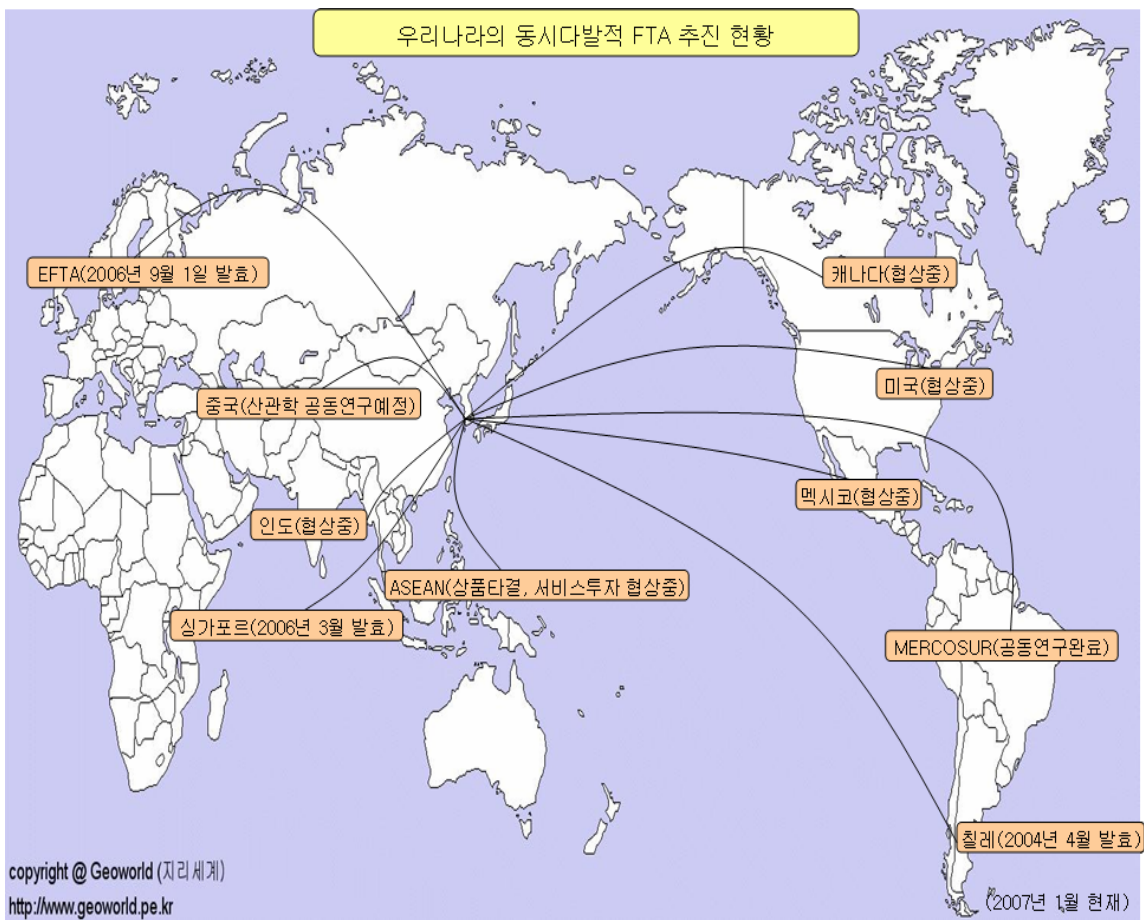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FTA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network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5대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5개 국가군이 우리 전체 교역의 거의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MERCOSUR나 인도 등 향후 큰 소비시장이 될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은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우리 정부가 단계적·순차적 추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무

역상대국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역외국가로서 우리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 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상쇄·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방의 수준에 있어서도 상품분야에서의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자료 : 외교통상부

<그림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회의에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향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 지금 국내외에 한국정부가 FTA 체결 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의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또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아마 제임기 안에, 그러니까 내년 안에 EU와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중국과도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서 말하자면 내년 중에 협상을 개시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축적시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6.11.2.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FTA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FTA 체결과정을 협상전 단계, 협상 단계, 협상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실무추진위원회 → FTA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FTA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대외경제 전문가 및 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또한 FTA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협상 개시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절차규정은 관련 전문가와 업계 이익을 수렴하는 것 외에도, FTA 추진 부서의 업계 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FTA 홍보나 피해계층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 등의 공감대 확산절차도 마련하였다.

〈표 2-1 FTA 체결절차〉

단계	세부절차	민간 의견 수렴절차
협상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추진 기본전략 수립 ■ 국내 연구기관에서 FTA 타당성 연구 실시 ■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민간자문회의」 검토 ■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FTA추진위원회」 심의 ■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상대상국 결정 ■ 산관학 공동연구 실시(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민간자문회의」에서 FTA 추진타당성 검토 ■ 공청회 등을 통해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협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대표단 구성 ■ 협상안 준비 ■ 「FTA민간자문회의」에서 중요 협상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자문 ■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FTA추진위원회」에서 중요협상안 심의 ■ 협상 진행 ■ 협상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 최종 협상안 결정 ■ 협정문 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민간자문회의」에서 중요협상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자문 ■ 협상결과를 관련업계, 연구기관, 민간단체에 설명하고 의견 수렴
협상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결과 국회보고 ■ 대국민 홍보 ■ 보완대책 마련 ■ 국무회의 심의 ■ 국회비준 동의 ■ 대통령 비준서 서명 ■ 시행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대국민 홍보 ■ 관련업계에 협정이행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

2. FTA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피해예상 산업 지원

가. 'FTA 이행지원특별법' 제정

DDA 및 FTA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FTA이행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 과수 농가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FTA 이행기금을 조성하여 농수산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생산 및 유통 선진화에 지원하는 한편, FTA 이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과 희망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는 2006년 4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10년간 2조 8,00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등의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 및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표 2-2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원 인	○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요건(기업)	①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②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③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기 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 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근로자 : 고용보험법령 등을 활용하여 전직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 위원장 : 경제부총리 ○ 위원 : 산자·노동·예산·산업단체추천·학계전문가 등 15인 ○ 실무위원회 설치(위원장 : 산자부차관 예정)
재원조달	○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재정소요 추계(10년)	○ 총 2조 8,473억원(기업 2조 6,400억원, 근로자 2,073억원)

이러한 지원 제도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1962)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의 지원프로그램은 GATT체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자적 무역자유화의 파고속에서도 수입 대체산업부문의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 무역조정지원 관련 해외사례〉

국가	지원 제도
미국	○ 1962년부터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국 산업과 실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
EU	○ 1957년 유럽통합 이후 유럽공동체의 최우선 목표인 역내 국가·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구조기금(ESF: Europe Structural Fund)을 창설하여 운영
일본	○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활력재생법」을 제정하여, 사업재구축·공동사업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세제·상법·금융 지원 등을 제공

제 2 부 FTA 추진 현황

제 3 장 발효중인 FTA

1. 한·칠레 FTA : 처음으로 추진한 FTA

칠레는 우리 산업과의 상호 보완성,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정치적 위상,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의사 등을 감안하여 첫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한·칠레 FTA 협상은 1999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2년 10월 제6차 협상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으며, FTA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농민단체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4차례 비준시도 끝에 2004년 2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한 FTA로서 협상과정에서부터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방법 뿐만 아니라, FTA 발효가 실제 우리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가. 추진배경

1998년 11월 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당시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IMF 경제위기를 통해 가시화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상국가로는 칠레가 선정이 되었다.

칠레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공산물을 칠레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칠레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다.

둘째, 칠레는 남미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서 남미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정치적 위상 또한 크다.

셋째, 칠레가 세계 최대 과일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대척점에

위치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 생산시기가 우리나라와 겹치지 않아 우리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넷째, 칠레는 제3국과 FTA를 많이 체결하여 FTA추진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 험난한 협상과정

가) 협상 초기

공식 협상은 1999년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1차 협상으로 시작되었으나 협상타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협상을 2000년 말까지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쟁점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이 때문에 쉽게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1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5년간 관세의 균등철폐, 일부 품목은 10년간 관세의 균등철폐, 예외적인 경우 15년까지 관세의 균등철폐를 제시하였고 아주 민감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칠레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관세를 10년간 균등철폐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만 10년간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2000년 2월 2차 협상에서는 FTA협정문에 대한 상당 수준의 논의와 함께 양허안이 교환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내 입장조율이 미진하여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양허안만 제출하였고 칠레측은 모든 품목의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공산품에서 제시한 양허안이 칠레로부터 수입의 54%(1999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기동(電氣銅)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의 조기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인데 반해 칠레측의 양허안은 공산품 관세의 즉시철폐 비율이 13%에 불과해서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3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까지 포함한 양허안이 교환되었으며 칠레측의 양허 개선안은 즉시 관세철폐 품목수가 4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은 민감 품목인 약 35%의 농산물을 DDA협상 이후에 논의하자는 유보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 협상의 교착기

그러나 4차 협상 이전부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칠레측의 민감업종인 섬유업계가 1999년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섬유부문을 FTA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칠레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칠레측은 3차 협상까지 우리의 농산물 양허계획에서 칠레측의 주요 관심 품목들이 빠져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측의 양허안이 만족할 수준이 될 때까지 협상을 일단 연기할 것을 4차 협상 직전에 요청하기도 했다.

농산물 양허안 개선방향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내의 이견해소에 상당 시간이 소모되면서 4차 협상은 2000년 12월이 되어서야 개최되었다. 그러나 4차 협상에서도 양국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측이 칠레측의 관심품목 중 일부를 수용하는 양허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칠레측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였다. 칠레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협상시한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EU, EFTA 등과의 FTA 협상 일정상 우리와의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차 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칠레측의 관심 품목을 상당히 반영한 양허안을 작성하여 2001년 3월 실무협의를 칠레측과 가졌다. 그러나 칠레는 당초 자국이 제시했던 '협상대상에서 예외 품목은 없다'는 협상원칙에 어긋나게 예외품목을 설정하는 등 후퇴된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하여 협상 타결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장기간 교착기에 들어가게 된다. 2001년의 양허안 실무협의 이후 6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의 칠레 방문, 그해 10월의 상해 양국간 통상장관회의 등 접촉이 있었으나 그해 12월 칠레의 국내선거 등을 이유로 협상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02년 2월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양국 국장급 회담을 가졌으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 협상종료

2002년 6월 우리 정부가 대통령 특사를 칠레에 파견하여 우리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칠레 라고스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긍정적인 약속을 얻어내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해 6월 칠레는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했다. 다만, 칠레측은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과 구리 등 자국 관심 품목에 대해 우리측의 배려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칠레측이 2002년 6월에 제시한 양허안과 우리측이 2002년 2월에 제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2002년 8월 한·칠레 양국은 5차 협상에 진입하였다. 칠레측은 종전과는 달리 과실, 육류, 양념류 등 자국의 관심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철폐 기간 단축과 일정 물량의 관세 할당 물량(TRQ)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철폐 기간 조정과 관세 할당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9월과 10월 양허안에 대한 별도의 실무협상이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한·칠레 양국은 칠레산 사과와 배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공산품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러한 실무조정을 거친 후 10월 제네바에서 농업분야의 쟁점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보게 되어 사실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칠레측의 금융시장 개방 관련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6차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4년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2002년 10월 24일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최초의 FTA협상이었으며 협상 타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최종적인 협상타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칠레 양국의 협상 일정이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순조로운 추진과 타결이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계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FTA를 통한 이익은 제조업분야로 귀속되면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농업분야에 집중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칠레 역시 선거와 같은 국내 정치 일정에 따른 제약과 취약한 섬유산업에서의 협상 반대 등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칠레측이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라) 협상타결 내용

한·칠레 FTA 협상결과 중 가장 중요한 상품양허내용을 중심으로 협상결과를 평가하면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체결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자유화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GATT제24조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유화

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양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칠레는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2%,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 수준이 비슷하다.

<우리측 양허내용>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총 10개로,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 적용, 자유화 제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양허안은 품목수 기준 총 11,170개 품목 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발효와 동시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대부분인 9,101개 품목은 공산품이며, 나머지는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품목이다. 10년 이내 자유화하는 품목은 총 품목의 96.2%로 공산품, 임산물 및 수산물의 전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 해당된다.

<칠레측의 양허내용>

칠레측의 양허 카테고리는 관세의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분된다. 총품목 5,854개 중 2,450개(41.8%) 품목의 관세가 FTA발효와 함께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칠레는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총 5,648개(총 품목 수 대비 96.5%) 품목을 10년내에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칠레의 공산품 즉시 관세 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경쟁력이 뛰어난 농림수산물은 일부 품목(52개)을 제외한 대부분은 FTA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칠레 FTA 발효후 3년간(2004.4월 ~ 2007.2월)의 성과 평가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와 및 FTA 협상경험 축적>

한-칠레 FTA는 양국 수입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상품·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만 낮춘 것이 아니라, IT,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산업협력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FTA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 협상의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국내 전문 협상인력 pool도 확보하는 등, 앞으로의 FTA 정책을 구체화하고 본격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3년 9월 정부가 수립한 「FTA 로드맵」은 이러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FTA 추진정책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각각 10개월 및 7개월 만에 조기 타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이 한·칠레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타당성의 기반위에 그동안 확보된 전문협상 인력을 100%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칠레서 약진>

칠레 산티아고 현지는 베르나와 클릭 등 현대차로 가득 차 있다. 2006년 한국차의 칠레 수출량은 4만9925대로 전년보다 6000대 이상 늘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오른 반면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차에 밀려 한국차가 고전했지만 칠레에서만은 예외였던 것이다.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5.7%를 기록 중이다. FTA 발효 전 18.8%로 일본차에 크게 뒤졌던 한국차가 이제는 일본차(26.1%)를 추월할 기세다. FTA 발효 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휴대전화가 108%를 기록했고, 자동차(52%), 컬러 TV(24%) 등도 급속히 칠레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표 3-1 칠레 자동차시장 국가별 판매 추이>

	2003	2004	2005	2006
일 본	28,109(23.5)	37,716(25.4)	46,140(25.2)	49,762(26.1)
한 국	22,510(18.8)	31,202(21.0)	42,320(23.2)	48,925(25.7)
아르헨티나	22,258(18.6)	28,672(19.3)	29,173(16.0)	22,486(11.8)
브 라 질	18,535(13.5)	18,786(12.6)	25,262(13.9)	20,702(10.9)

자료 : 재경부

<무역적자 늘었지만 실속은 챙겨>

한·칠레 FTA 발효 1년 전(2003년 4월~2004년 3월)에 8억 달러 정도였던 대(對)칠레 무역적자는 발효 3년차(2006년 4월~2007년 2월)에는 22억 달러로 늘어났다.

〈 표 3-2 한-칠레 교역동향〉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발효前 1년 (‘03.4~‘04.3)	발효後 1년 (‘04.4~‘05.3)	발효後 2년 (‘05.4~‘06.3)	발효後 3년 (‘06.4~‘07.2)
수 출	526(9.8)	829(57.6)	1,217(46.8)	1,576(44.2)
수 입	1,328(63.5)	1,926(45.0)	2,551(32.5)	3,815(66.8)
무역수지	-802(-140.8)	-1,097(-36.8)	-1,334(-21.6)	-2,239(-87.5)

자료 : 재경부

하지만 이는 칠레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구리 등 주요 교역 원자재 가격이 같았다면 FTA 발효 1년 전 8억 달러 정도였던 대칠레 무역 적자는 발효 3년 후 4억 달러로 절반이 줄어든 셈이 된다.

〈표 3-3 銅가격변동 효과를 제외한 양국간 무역수지〉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발효前 1년	발효後 1년	발효後 2년	발효後 3년
銅관련제품 제외시	+146(-43.8%)	+326(123.3%)	+421(29.1%)	+796(89.1%)
銅가격 고정시	-804(-52.3%)	-703(12.6%)	-606(13.8%)	-411(28.7%)

자료: 재경부

〈국내 농가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돼지고기(125%), 포도(109%), 와인(321%) 등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났지만 농가 타격은 크지 않았다. 대부분 미국 등 경쟁국의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키위(583%)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수입량이 늘었지만 대부분 기존 뉴질랜드산이 장악한 시장을 잠식했다. 홍어와 돼지고기는 미국(돼지고기)-아르헨티나(홍어)의 공세에 밀려 칠레산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당초 정부는 칠레와의 FTA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포도, 키위, 복숭아 농가를 위해 2,600억원을 폐업농가 폐업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2004년부터 3년 동안 1만1,300여 농가에 1,445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포도뿐 아니라 키위의 국내 재배 면적은 2003~2005년 사이 11%나 늘었고, 복숭아의 국내 생산량도 증가했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농가에 현찰로 보상해 주기로 한 소득 보전 직불제도는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피해가 당초 예측했던 수준보다 낮은 이유는 사과, 배, 쌀 등의 예외인정, 지리적 원격성에 따른 제한적인 농산물 수입효과,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 등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포도 등 농산물 관세가 10년이상 장기에 걸쳐 철폐된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큰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

◇ [그후3년] 한국·칠레 FTA ... 득실 따져보니 (2007.3.26. 중앙일보)

2004년 2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민들이 집어던진 쌀가마와 빈 병으로 국회는 쓰레기장 같았다.

농민들은 이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국내 포도·복숭아 농가는 모조리 망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런 격렬 시위를 뚫고 국회는 이날 건국 이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3년. 과연 농민들 주장대로 국내 포도 농가는 망했을까.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의 시설 포도 재배 면적은 2003년 1,412ha에서 2006년 1,636ha로 오히려 16%가량 늘었다. 가격도 10%가량 올랐고, 생산량도 소폭 늘었다. 국내 포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칠레산 포도에는 11월부터 4월까지만 관세를 낮춰주는 계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칠레산 포도 수입은 대부분(70%)이 이 기간 중에만 이뤄졌다. 국내산이 시장에 나오는 5~10월에는 사실상 칠레산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국내 포도 농가도 타격을 입지 않는 윈-윈 시장 개방이 이뤄진 셈이다.

2. 한·싱가포르 FTA : 아시아권역에서의 FTA

한·싱가포르 FTA 협상은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 실무 협상을 거쳐 2005년 8월 양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고, 2005년 12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2006년 3월 2일 정식 발효하였다.

싱가פור는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적어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이익 집단이 적다는 점, 이미 양국간 많은 부분에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 졌다는 점, FTA를 통한 규제개혁과 제도화로 외자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이후 FTA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평가되었다.

가. 추진배경

싱가פור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이다. 1999년 뉴질랜드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미국, EFTA 등 주요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온 싱가פור는 FTA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1999년부터 우리측에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제의해 온 바 있다.

싱가פור의 내수규모, 무관세, 산업경쟁관계 등을 감안시, FTA 체결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우리기업의 추가 시장진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선진국인 싱가פור와의 경쟁 및 협력을 통해 국내의 서비스·투자부문의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유치 증대 효과가 기대되었고, 동남아 무역·투자 진출 교두보로서 싱가פור가 갖는 장기적 전략적 장점이 적극 고려되었다.

나. 순조로왔던 협상과정

한·칠레 FTA가 3년간의 협상과 4차례의 비준동의 시도끝에 탄생한 것과 비교하면 한·싱가포르 FTA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FTA 협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싱가פור의 경우 농산물과 같은 민감 분야가 거의 없었으며, 이미 높은 수준의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고 있었기도 하거니와, 우리측이 한·칠레 FTA 협상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한·싱가포르간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

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축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시드니 WTO 소규모 각료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국간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최종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공동연구보고서의 이러한 권고에 기초하여 양국 정상은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그 후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는 협정문이 가서명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우리측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싱가포르측 Lim Hng Kiang 통상산업부 장관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다.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동남아 - 동북아 허브의 연결>

한·싱가포르 FTA는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양국이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된 셈이다.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對韓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ASEAN FTA 추진을 위한 디딤돌>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 협상 추진

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인구 5.5억, GDP 8,600억불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또한,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 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에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인정받음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라. 한·싱가포르 FTA 발효 1년간(2006.3월 ~ 2007.2월)의 성과 평가

<FTA 체결후 무역수지 64% 상승>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FTA가 발효될 경우에도 수출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수입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 발효후 1년(2006년 3월 ~ 2007년 2월)을 발효전 1년(2005년 3월 ~ 2006년 2월)과 비교해보면, 무역수지가 64%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효 후 1년간 대 싱가포르 수출 증가율은 24.6%를 기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한 전체 수출 증가율이 13.3%임을 감안하면 FTA 발효에 따라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4 한·싱가포르 FTA 전후 무역수지 현황>

	발효前 1년	발효後 1년	(백만불, %) 증가율
수 출	7,868	9,805	24.6
수 입	5,550	6,010	8.3
무역수지	2,318	3,795	63.7

수출은 싱가포르의 경제호황(2006년 실질 GDP 증가 7.9%)과 반도체 수요증가(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반도체 수출증가율 35.1%), 선박수주 증가(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선박 수출증가율 23.9%)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제품(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이 FTA발효 전에 이미 無관세이거나,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

3. 한·EFTA FTA : 유럽 경제권과의 FTA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현재까지 발효중인 FTA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에도 한국의 FTA 파트너가 생겼다.

유럽 선진경제권인 EFTA는 우리 수출제품의 유럽시장공략 성공가능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Test Market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향후 거대경제권인 EU의 FTA 추진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추진경과

우리 정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번째 FTA 대상으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들의 경제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선정하였다.

한·EFTA FTA는 2004년 5월 14일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2004년 8월과 10월 제네바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두 차례의 공동연구회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와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2004년 10월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FTA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가 확정되었다.

※ 공동연구 결과 제시된 한·EFTA FTA의 정성적 효과

- 한·EFTA FTA는 한국의 對유럽 관계 및 EFTA의 對동북아시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정량화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 모두에게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 한국과 EFTA 양측간 경제가 대체로 보완적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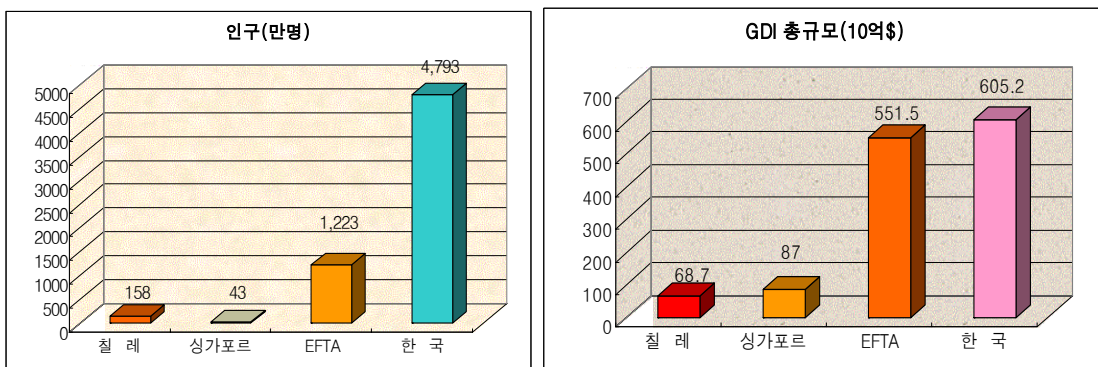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EFTA FTA 추진타당성에 대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12월 1일 양측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공식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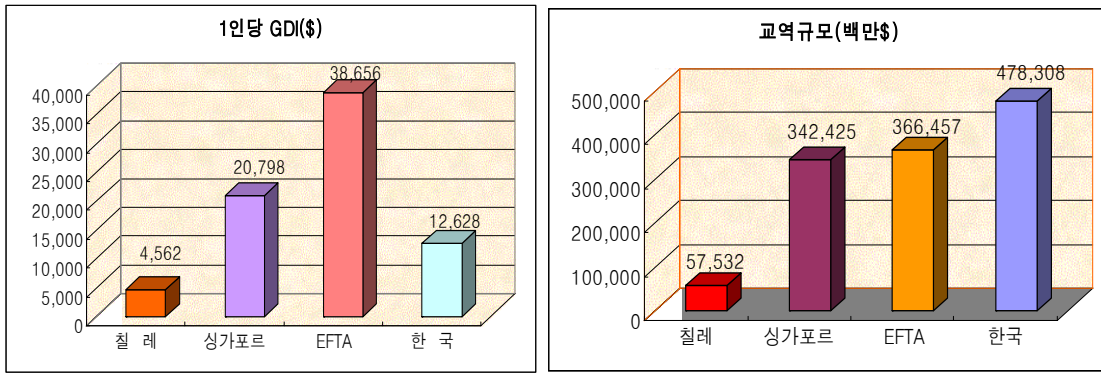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05년 1월 제네바에서 공식협상을 개시하고 4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7월 동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9월에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하고,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FTA는 양측의 국가별 국내비준절차가 2006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2006년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나. 의의

<최초의 선진경제권, 유럽경제권 FTA 파트너>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과의 FTA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 파트너가 생겼다. EFTA 4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우리의 2배를 능가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 수준이다.





자료 : World Bank, 통계청

<그림 3-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 비교>

<보완적 산업구조>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라서 이번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 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음은 물론, 유럽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의 발효에 따라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였다. 우리나라도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나,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국내 민감분야의 산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EFTA FTA는 상품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 내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WTO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 협정에서는 기존의 투자 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보호 수준 강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즉 EFTA측이 우리의 우호적인 투자국임을 감안하여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EFTA 회원국으로부터 양질의 외국인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 추진의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

한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우리나라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비율만 넘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발판>

끝으로 한·EFTA FTA 협상 경험은 최근 개시된 EU와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EFTA는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개별국가가 아닌 경제공동체가 협상주체라는 점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협상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EFTA FTA 협상은 한·EU FTA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전초전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 장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

1. 한·미 FTA의 중요성 : 세계 최대시장과의 FTA

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혁신 전략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의 흐름에 잘 적응해 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미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FTA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회를 넓혀 준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 FTA가 체결되면 관세·물류비용 등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의 바이어 60%가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사겠다는 응답도 36%를 차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FTA 체결을 통해 관세장벽 이외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장벽 등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어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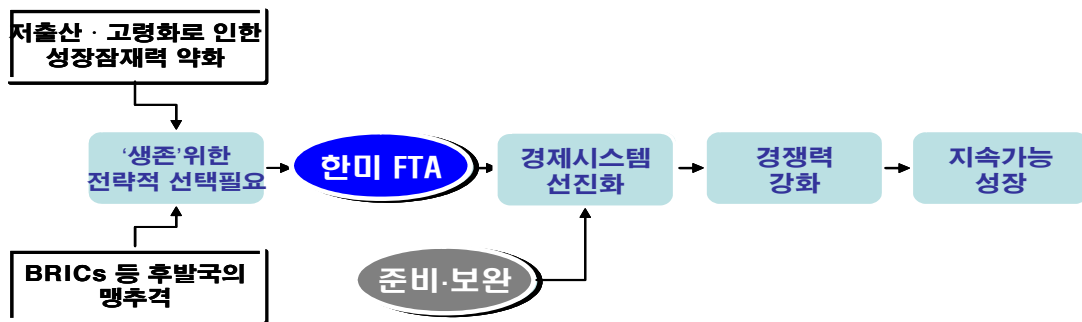
다음으로 선진국과 체결하는 FTA는 우리 내부의 혁신 노력과 결합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OECD 가입, IMF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미 많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 회계 등 서비스의 추가적인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여지가 남아 있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전반의 업그레이드 효과이다. 한·미 FTA는 투자, 지재권, 경쟁,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도입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확산 등 선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든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제거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국민후생적 차원에서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한편 한·미 FTA를 기폭제로 EU, 캐나다, ASEAN, 일본, 중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도 가속화됨으로써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미국과의 FTA를 타결시킴으로써 세계시장의 허브(hub)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을 마련하였으며, 미국과의 강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한·미 FTA의 배경과 지속가능 성장의 관계>

2006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도전정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성공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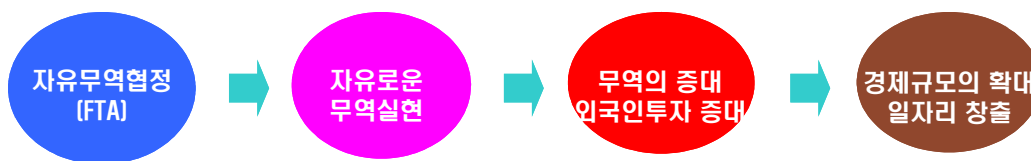
○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2006.8.15. 8.15경축사)

나. 국민소득, 수출, 외국인 투자 증대

가) 국민소득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도 경제개방정책의 하나로서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이 중요한 목표이다. 한·미 FTA는 우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역 및 투자의 증대를 통한 국민소득의 향상과 고용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증진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확대시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보다 좋고 싼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림 4-2 FTA 체결의 효과>

나)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대상국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ASEAN 및 멕시코 등지로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 미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수입시장 점유율
총 계		1,670,940.4	13.7	100
1	캐나다	287,870.2	12.5	17.2
2	중국	243,462.3	23.8	14.6
3	멕시코	170,197.9	9.2	10.2
4	일본	138,091.2	6.6	8.3
5	독일	84,812.5	9.8	5.1
6	영국	51,063.4	10.0	3.1
7	한국	43,779.5	-5.2	2.6
8	대만	34,838.0	0.6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미국이 2005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29.9억달러(신고기준)에 달한다. 1962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금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EU에 이어 제 2의 해외직접투자국이다.

한·미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對한국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외적 위험 요소(정치·안보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이외 국가로부터의 투자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다시 한 번 국제규범 형태로 확인해 주어, 외국인투자자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자유화 후퇴 가능성(backsliding)”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후속 FTA 협상에서 협상력 증진

한-미 FTA는 현재 동아시아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FTA 움직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FTA는 협상 개시 시점부터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EU, 중국 및 중동 GCC 국가 등이 한국과의 FTA를 희망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였으며, FTA 타결 이후에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방한하여 한-중 FTA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거대경제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축적된 협상 노하우(know-how)는 앞으로 이어질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 유용한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구비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미국의 FTA 추진현황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북미의 캐나다 및 멕시코와 1994년 NAFTA를 체결하였고, 칠레 및 중남미 6개국(CAFTA-DR, 코스타리카는 미발효)과의 FTA도 체결하였다. 페루, 콜롬비아와는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다. 파나마와는 곧 FTA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미발효), 싱가포르, 호주와 FTA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 및 파나마와는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 체결 : 18개국(발효 14개국)
- 타결 후 서명 예정 : 2개국(파나마, 한국)
- 교섭중 : 4개국(말레이시아, 에콰도르, UAE, 태국)
- SACU(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 남아공, 보스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와는 협상을 중단하기로 공식 선언

2. 협상 경과 및 주요내용 : 준비에서 타결까지의 기록

가. 협상준비

한국과 미국은 2006년 2월 3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2006년 3월 6일, 4월 17~18일 두 차례의 비공식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일정, 협상 진행방식, 협상 문서의 공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 감안되었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이며 2007년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협상체결 90일 이전까지는 미 의회에 협정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상 타결의 목표시한을 2007년 3월말로 설정하였다.

【참고】 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제도

◇ 개념

-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 연혁

-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연장 내지 부활되어 오다가 1994년 UR협정 비준이후 한동안 소멸
 - 부시정부는 출범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을 강조하며 TPA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 2002년 8월에 TPA가 부활됨(TPA의 효력은 2007년 7월 1일 종료)

◇ TPA의 주요내용

-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양측은 2006년 중에는 6월, 7월, 9월, 10월, 12월 모두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일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상진행을

위해서 모두 17개의 분과(Negotiating Group)와 2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협상의 공식영문 명칭은 KORUS FTA로 확정하였다. 협상중에 교환되는 모든 문서의 공개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이 '협상타결 10년후'를 제안했으나, 한국의 수정제안으로 '협상타결 3년후'로 결정되었다.

<KORUS FTA 명칭 결정 배경>

- 한·미 FTA의 공식 영문명칭인 "KORUS FTA"는 한국(코리아)의 "KOR"을 따고 미국(U.S)의 "US"를 섞어서 작명한 것이다.
- 미국은 자국의 명칭 US가 앞으로 나오는 명칭을 희망하였으나, KORUS가 합창(chorus)과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 한미간 win-win하는 협상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KORUS FTA로 양측간 합의하였다

정부는 우리측 협상 목표 및 협정문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2006년 5월 12일 국회에 보고하고 5월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상품 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등 모두 22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1차 협상전에 국회보고를 통해 발표 한·미 FTA의 협상목표 및 분야별 협상목표를 다음과 같다.

<전반적 협상 목표>

-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 ◇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표 4-2 한·미 FTA 분야별 협상목표〉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상품무역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절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 /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위생검역 (SPS) 기술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서비스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일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초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통신서비스 /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 및 노동분야 협력 강화 ○ 국내 환경법령 및 환경 보호수준과 조화되면서,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을 마련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나. 협상진행

〈표 4-3 협상진행 개요〉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협상 내용	비 고
1차 협상	<2006> 6.5~9, 워싱턴 DC	- 양측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 교환 및 통합협정문 작성	
2차 협상	7.10~14, 서울	- 관세양허안 작성 기본틀 합의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의약품 문제로 일부 분과 협상 중단
3차 협상	9.6~9, 시애틀	- 관세 양허안 교환(8.15) 및 협상 개시 - 서비스/투자 유보안 명료화 작업 진행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 (상품/섬유)
4차 협상	10.23~27, 제주	- 관세양허안 불균형 문제 개선 -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 진행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상품)
5차 협상	12.4~8, 몬타나	-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측을 집중 압박 - 상품양허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지적권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 달성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 협상 중단 *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상호 교환
6차 협상	<2007> 1.15-19, 서울	- 핵심 쟁점 진전을 위한 수석대표간 협의 - 상품,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진전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 협상 미개최
7차 협상	2.11-14, 워싱턴 DC	- 상품 양허안 개선 (즉시철폐율 85%) - 노동, 환경, 경쟁 등 실질적 타결기반 마련	*모든 분야 협상 개최 -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활용
8차 협상	3.8-12, 서울	- 경쟁, 통관, 정부조달 타결 - 주요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 달성	
고위급 협상	3.19-21, 워싱턴 DC	- 양측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 잔여 쟁점 축소 및 의견 접근을 통해 협상타결 기반 마련	
고위급 협상	3.26-4.2, 서울	- 4.2 협상 타결 선언	

가) 제1차 협상(2006.6.5 ~ 6.9, 미국 워싱턴 DC)

제1차 공식 협상은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제외한 17개 분과 및 작업반별 회의가 미국 USTR과 상무부 회의실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정부조달 분과(5월 29일, 6월 2일) 및 TBT 분과(6월 5일)는 제네바에서 별도로 개최되었다.

한·미 양측은 제 1차 협상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당초 목표한대로 양측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만, 양측간 이견이 컸던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분과에서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미측은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s) 관리 상세절차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생검역 분과에서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을 보였으나,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 인정, SPS 관련 통상현안과 FTA 협상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가 있었다.

한편 섬유분과에서 우리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국측은 섬유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하였고, 무역구제분과에서 우리측은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의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동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민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 제2차 협상을 준비하였다.

나) 제2차 협상 개최(2006.7.10 ~ 7.14, 한국 서울)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는 양측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고, 이는 전체 2차 협상의 진행에 일부 장애를 초래하여, 7월 13일~1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4개 분과회의(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동 협상에서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동 이슈가 FTA 틀내에서의 협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되었다. 미국측은 7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7월 14일 개최예정이었던 상품분과 및 환경분과 회의 취소를 미국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상품분야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어, 양측은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상품/섬유/농산물의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섬유/농산물의 경우 양측은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일단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기로 했다.

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은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로 구분하였으며, 우리측은 기타(undefined)에 제외가 포함될 수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양측은 7월 11일 서비스분과 협상시,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1차 협상시 통합된 협정문을 기초로 문안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협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 제3차 협상 개최(2006. 9.6 ~ 9.9, 미국 시애틀)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동 3차 협상에서는 특히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양측간 확인작업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미국측 양허안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국측은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추가적 개선을 위해서 4차 협상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계속 협의기로 했다.

미국측도 우리 농업분야의 양허 수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해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3차 협상을 통해 협상쟁점들이 명확화되고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제4차 협상 개최(2006. 10.23~10.27, 한국 제주도)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 중문단지에서 한·미 FTA 제4차 협상

이 개최되었다. 동 4차 협상에서는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조달 분과회의는 10일 16일 제네바에서 별도로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동안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 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동 협상의 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2차 협상 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정문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마) 제5차 협상 개최(2006. 12.4~12.8, 미국 몬타나)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 진전의 물꼬를 틀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미국측이 무역구제 관련 주요 관심사항인 반덤핑 관련 5개 사항과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를 수용해 줄 것과 2006년 말 의회보고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월 6일 협상을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측의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함께 중단하여 미측을 압박하였다.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여타 분야에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적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도 미국측은 6억불, 한국측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국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정문상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던 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의 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측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폐 등에 합의하였으며, 기타 쟁점에 있어서도 양측간 이견폭의 축소 또는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향후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제6차 협상 개최(2007.1.15~1.19, 한국 서울)

2007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동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측은 동 협상기간중 수석대표간 연쇄회동, 수석대표와 일부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을 통해 협상의 진도를 점검하고 쟁점들에 대한 절충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상품분야에서 미국측이 우리의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양허안 전체로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양측이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미측은 18.9억불(457개), 우리측은 14.2억불(569개)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고, 기타(undefined) 품목의 50%를 10년철폐 대상으로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물 양허안에서는 세부 품목별로 양측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섬유 양허안 협상에서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철폐 및 원산지기준 완화, 섬유 세이프가드 및 우회방지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바, 우리측은 2006년 12월 양측 섬유분야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 양측은 그간 명료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절충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양측은 7차 협상전에 관세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계속 보완키로 하고, 일부 분과는 7차 협상전에 회기간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사) 제7차 협상 개최(2007.2.11~2.14, 미국 워싱턴 DC)

2007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의 적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동 협상을 통해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모색하여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 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품 양허안에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통해 양측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동차 품목의 경우 미측이 세계문제와의 연계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고,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지속되었다.

섬유분야에서는 미측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해 왔으며,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중점 협의가 계속 되었고,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을 축소하였다.

아) 제8차 협상 개최(2007. 3.8~3.12, 한국 서울)

2007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 양측은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여,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협상을 통해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되었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전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 고위급 협상 개최(2007. 3.19~3.22, 미국 워싱턴 DC)

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었다. 양측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를 통해 잔여 쟁점 축소 및 의견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협상 진전이 부족한 분야인 섬유, 원산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금융, 지적권 등에 대한 조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섬유 분야는 산자부 이재훈 차관이 별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였다. 노동/환경, SPS, 의약품 분야는 실질적 협상타결을 이루었으며, 지적권 분야는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였다. 원산지, 서비스 분야는 방대한 협상 분량으로 실무급 협상이 지속되었다.

우리측은 특히 자동차 양허개선과 섬유분야 협상진전을 강력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국내적 민감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양측은 상호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3월 26일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통상장관급) 협의를 의식, 상호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협상 종료(2007. 3.26~4.2, 한국 서울)

한·미 양측은 2007년 4월 2일 오후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권, 총칙, 자동차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는 분과의 분과장간 회의도 함께 개최되었고, 또한 그동안 별도 협상을 진행해 온 농업 및 섬유분과의 양측 고위급 협상 대표들도 참가하여 협상에 박차를 가하였다.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던 2007년 3월 29일 부시대통령은 당시 중동 순방중이던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한·미 FTA의 핵심내용을 조율하기도 했다.

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상품 분야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

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앰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2003~20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2003~20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m²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 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반덤핑 발동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

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기술장벽(TBT)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서비스/투자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사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는 협정 발효후 2년내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유무선 제1사업자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은 협정에 반영하지 않고,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위원회를 설치기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ISD)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다) 기타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 확보를 위해 환경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이행시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적재산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기로 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 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대국민 담화문에서 협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적 실익에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2007.4.2. 한·미 FTA 체결 대국민 담화문)

◆ **경제전문가, 협상 결과에 상당수 만족**

※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미 FTA 관련 경제전문가 조사결과로, 1차 조사(2006년 11월)와 2차 조사(2007년 4월)에 모두 응답한 253명의 답변을 비교 분석한 자료다.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는 경제관련 학과 교수 90명, 연구소 연구위원 41명, 금융인 30명, 기업인 36명, 기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전문가 65.6%, 협상 결과에 만족 의견 나타내

○ 경제전문가들은 2006년 11월에 실시한 1차 의견조사에서, 4차 협상까지의 성과에 대해 만족 11.1%, 보통 53.8%, 불만 35.2%로 답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최종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서는 65.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져

○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4차협상 직후인 1차 조사에서는 경제전문가의 12.6%만이 '만족한다'(불만은 51.4%)고 평가했으나 협상 타결 이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57.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분야 만족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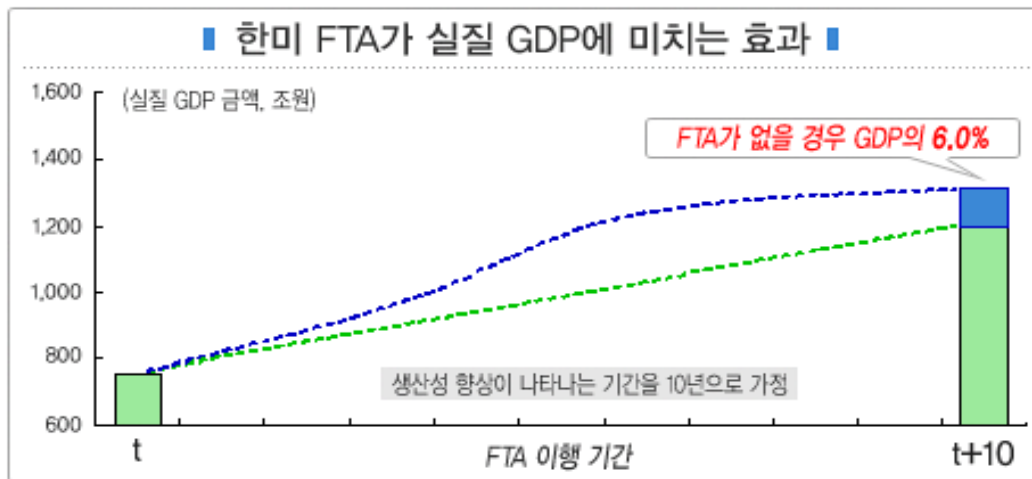
○ 분야별 협상 타결 내용 중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분야에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농업·금융·무역구제·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을, 의약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경제 2007년 5월호, 74p~75p)

마. 협상 타결의 경제적 효과

2007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실질GDP 증대효과는 단순히 상품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증진 효과만 고려할 땐 0.3% 증가하지만 FTA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개선,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면 최대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6년 한·미 FTA 협상출범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2006년 분석의 경우 당시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개방의 수준은 가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석에서는 제조업은 완전개방, 농업은 쌀 포함, 서비스는 20% 개방을 가정으로 해 실질GDP가 최대 7.7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도 증가>

한·미 FTA로 인해 고용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는 5만7000명, 장기적으로는 8만3000명~33만6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 효과가 가장 큰 반면, 농림어업은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5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농림어업에

서는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다는 가정과 개방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서 1.2%, 서비스업에서 1% 발생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가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1만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제조업(광업 포함)에서는 2만7000~7만9000개, 서비스업에서는 6만9000~26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규모 19억6000만달러 늘어>

국책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대미 수출이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연평균 8억6000만달러가 확대됨에 따라 결국 대미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남에 따라 對세계 무역수지의 흑자규모는 19억6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전환효과란 기존에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FTA로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효과를 뜻한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억7000만달러, 對세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억7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산업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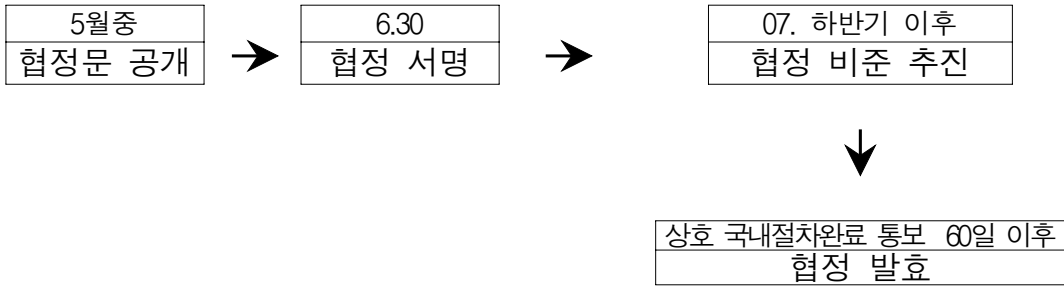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對세계 무역수지는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무역수지는 흑자가 확대될 것이다.

바. 향후 일정

한·미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협정문을 확정짓게 되며, 이렇게 확정된 협정문은 협정문 공개를 위해 필요한 양측간 협의절차를 거친 후 5월중 협정문을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2007년 6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며, 2007년 하반기 이후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협정 비준을 추진하게 된다.

양국의 국회 비준 이후,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60일 이후 발효되는 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에는 협정발효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제 하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 5 장 협상이 진행중인 FTA

1.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가. 한·일본 FTA

우리의 3대 교역국인 일본과의 FTA 추진 논의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과 양국간 한차원 더 높은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본과 FTA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수행된 민간기관간 공동연구 이후 2001년 3월 및 2002년 1월 두차례 양국 경제인간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회의가 이루어지면서 한·일 FTA 협상 여건이 구축되었다.

2003년 10월 20일 방콕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2005년내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2003년 12월 22일 제1차 한·일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말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표 5-1 한·일 FTA 협상 경과〉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제1차 협상	03.12.22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추진체계(7개분과) 설치 ○ 협상 일정(2개월주기) 합의
제2차 협상	04.2.23-25	도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분야별 양측 기본입장 교환 및 확인
제3차 협상	04.4.26-28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초안 교환 및 의견 교환
제4차 협상	04.6.23-25	도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양허안 전반적인 수준 협의
제5차 협상	04.8.23-25	경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안 교환 이전에 공산품 및 농수산물 양허 수준 관련 준비회의 개최 합의
양허안 관련 사전회의	04.10.20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양허수준 제시 - 한국측 : 공산품(95%), 농수산물(90%) - 일본측 : 공산품(99%), 농수산물(미제시)
제6차 협상	04.11.1-3	도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측의 농수산물 양허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차기 협상 일정에 대한 합의 유보

협상 초기 일본은 우리의 공산품 양허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 2004년 6월 개최된 제4차 협상회의에서 “협상을 통해 양허수준을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양허안 교환 이전에 전반적 양허수준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우리측에 공식 제시해와 2004년 8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사전협의 후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국내 성·청간 조정 결과,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2004년 10월 개최된 사전회의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수준을 우리측에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4년 11월 제6차 협상에서는 “양허수준이 낮더라도 협상을 통해 올릴 수 있으므로 우선 양허안 교환(협상 재개)부터 하자”고 당초의 입장을 180도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양측이 합의한 사전협의 후 양허안 교환 방식에 따라, 일본측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수준을 제시해야 함이 순리이며, 양허수준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양허안 교환부터 할 경우, 일본은 낮은 수준의 농수산물 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우리측이 일본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입액 기준으로 5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상을 통해 이를 우리 목표 수준인 90%까지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므로 양허안부터 교환하자는 일본측의 변화된 제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수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며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수준을 제시하면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후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수준을 제시해오지 않고 있어 협상 중단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산품 시장에서 많은 혜택을 향유하게 될 일본이 협상과정 내내 정부조달 시장, 비관세장벽 해소, 동식물위생검역조치, 산업협력과 같은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도 우리측이 협상을 중단하게 된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우리는 일본이 먼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양국 정상에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향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최대한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 시장접근, 개성공단, 산업협력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할 예정으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의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 한·ASEAN FTA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1997년 이후 우리에게 FTA 체결을 제안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는 ASEAN과의 FTA 추진을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8월간 한·ASEAN 양측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연구 전문가 그룹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양국 정상에게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권고하였다. 2004년 9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양측 경제장관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추인하고, 정상들에게 FTA 협상 개시를 권고함에 따라, 2004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은 2005년부터 2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후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 협상이 개최되었다. 기본협정(2005년 12월), 분쟁해결제도협정(2005년 12월) 및 상품무역협정(2006년 8월)은 타결·정식서명되었고, 2007년 4월 2일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6월 1일 발효예정이며, 서비스·투자분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교환각서도 서명되었으며, 동 각서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의류, 시계, 신발 등)에 대하여 ASEAN 회원국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된다. 단 태국은 자국 국내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협상권 제약을 이유로 상품무역협정 서명에 불참하였으므로 상품무역협정 및 교환각서 당사국에는 제외된 상태이나, 협상참가국은 향후 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무역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우리의 제5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ASEAN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약 100억달러 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ASEAN FTA는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hub)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ASEAN FTA를 매개 삼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는 장래에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ASEAN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원

칙에 합의하여 싱가포르, EFTA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를 인정받은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성과이다.

다. 한·인도 CEPA

200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아주국장회의에서 인도측은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JSG) 출범을 제의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기존의 FTA 추진로드맵에서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2004년 8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무역공동위에서 양국간 FTA JSG 설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민방문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인도 JSG 출범에 합의하고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추진 타당성을 비롯, 양국 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양국 산·관·학 대표로 구성된 JSG는 2005년 1월 발족하여, 1년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CEPA 협상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한·인도 JSG는 양국 경제정책의 유사성, 교역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같은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CEPA가 기존의 경제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① 상품교역, ② 서비스교역, ③ 무역원활화, ④ 투자촉진, ⑤ 경제협력, ⑥ 그 밖에 양국이 합의하는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CEPA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고, 양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협상추진 공동 태스크포스(JTF: Joint Task Force)를 설치, 보고서 제출 후 최장 24개월 이내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5년 12월 개최된 한·인도 CEPA 추진 공청회에서는 양국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 공감대를 확인하여, 우리 정부는 2006년 1월 인도 대통령 방한시 CEP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협정문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FTA이며,

2007년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구 10억의 시장,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캐나다 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를 거대 북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정부는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체결을 단기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어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FTA 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FTA 예비협에서 양측은 FTA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FTA의 대상범위 및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 분야 및 민감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 등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는 공통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DDA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출범을 합의하고,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상품(공산품, 농수산물),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지적권, 경쟁 등 교역 관련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다.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체제 및 향후 협상 일정 등의 기본적인 협상 골격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이 진행되었다. 현재 10차 협상까지 마쳤으며, 2007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의 경쟁력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토대로 상호 실리적인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 한·멕시코 FTA

멕시코와는 2002년 8월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FTA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기로 한 후, 지속적인 FTA 추진논의가 있었으나, 2003년 10월 멕시코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수용, FTA 논의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멕시코와의 FTA 추진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4년 4월 OECD 각료회의시 개최된 한·멕시코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전문가그룹회의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6차례 개최되어, 제6차 회의에서 최종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5년 9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시 양국 정상은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SECA)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05년 11월 SEC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 초 공식 협상 개시와 협상진행의 기본틀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6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협상은 2006년 6월 제3차 협상까지 개최되어, 상품·투자·서비스·경제협력 등 협정문안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양측 상품양허안에 대한 이견차로 인해 차후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협상은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시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향후 멕시코측의 입장 변화를 주시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바. 한·EU FTA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농업 등 민감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속적인 EU 회원국의 확대로 역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 진출이 긴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EU는 WTO/DDA 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FTA 협상 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FTA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DDA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특히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FTA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EU측은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 추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제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5월 15일)에서

양측은 FTA 추진을 전제하지 않고 사전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7월 및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점검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 세미나 개최(2006년 6월 12일, 2006년 8월 25일) 및 경제적 효과 용역 연구 진행,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2006년 11월 24일) 개최 등을 통하여 한·EU FTA 추진 필요성, 추진시 경제적 효과, 분야별 고려 사항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한·EU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EU의 시장 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한·EU FTA가 GDP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U측도 2006년 10월 4일 DDA와 함께 WTO-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신통상정책 제안을 발표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ASEAN, 인도와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하였으며, 집행위(Commission)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EU 내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며, 2007년 4월 23일 EU 일반이사회에서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하였다.

우리 정부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협상개시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양측이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5월 6일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1차 협상(5월 7일 ~ 11일)에 이어 2차 협상은 7월 16일 ~ 20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 제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인 EU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가. 한·MERCOSUR FTA

2004년 11월 대통령 남미순방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에서 2006년간 총 4차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여, 200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양측간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세·비관세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협상개시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인구 2억 2천만명의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공산품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선을 확보하고, 나아가 심화되는 미주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중 FTA

2004년 11월 ASEAN+3 계기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2005년부터 2년 예정으로 진행되어 2006년 11월 종료되었다. 총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은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분야 도출 등 양측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중으로 2007년 3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한·중 FTA의 추진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수준, 국내 각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4월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여 한·중 FTA에 대한 중국측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과의 FTA 추진시 관세·비관세 장벽철폐로 거대 중국시장으로의 접근을 보다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및 성장 추세를 활용,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 고급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정착하여 미국·EU 등 선진 경제권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농업 등 민감한 영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동 영역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 3 부 주요 쟁점

제 6 장 대외협상과정의 쟁점: 한·미 FTA

한·미 FTA 협상의 분야를 가장 크게 나누면 ① 상품무역 분야(제조업, 농업) ② 서비스/투자 분야 ③ 기타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쟁점을 제조업 분야, 농업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제조업 분야 : 시장개방의 핵심

한·미 FTA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가 별개의 협상 분과 혹은 별개의 협상 분과 작업반으로 따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느 FTA 협상이 다 그러하듯이 한·미 FTA 협상에서도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 (back-bone)가 되는 만큼 제조업 분야가 핵심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즉, 제조업 발전 수준에 차이가 나는 나라들 사이에 FTA를 체결할 경우 제조업이 더 발전한 선진국이 상품 양허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업 발전에서 뒤처진 개도국이 상품 양허를 좀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이 적극적인 상품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에 미국이 제시한 상품양허안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상품양허안보다 더욱 소극적인 개방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특히 별도의 분과에서 논의하는 섬유 분야의 경우 많은 품목들을 기타 분야 (관세철폐의 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관세철폐 유예의 가능성도 가진 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도적인 소극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소극적인 상품양허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시장개방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 수준과 자국의 제조업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상품 양허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품목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직전 2~3년간의

해당품목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허단계에 따라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등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미 FTA의 경우는 협상과정에서 기타분야를 설정하여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비민감 분야의 양허협상은 조속히 진행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모든 품목을 양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아울러, 즉시철폐 또는 3년 철폐 합한 “조기철폐”를 양허 수준의 기준으로 할 경우, 한·미 FTA에서는 양측이 상품분야는 수입액 기준으로 94% 수준의 품목을 3년이내에 관세철폐하는 수준높은 양허협상을 이끌어 내었다.

가. 섬유 분야

섬유분야에서는 관세양허와 함께 섬유제품의 원산지 기준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에서 원사기준 (Yarn Forward Rule)을 일관되게 도입해왔고, 한·미 FTA에서도 원사기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섬유기업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사기준이 도입될 경우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수혜받지 못하는 수출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단일실질변형기준 (Sing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을 배제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미국은 다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개방에 따른 섬유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자국 섬유업체가 FTA 체결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섬유특별세이프가드 (Emergency Action)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섬유제품의 우회수입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 우회방지를 위한 양국 간 통관협력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개도국 섬유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유분야의 통관협력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입을 희망한 세부내용 중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 섬유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자동차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허수준과 더불어 우리는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관련 세제, 환경기준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먼저 양허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즉시 철폐를, 대형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서도 각각 3년내, 10년내 철폐를 양허했으며, 우리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즉시 철폐를 양허했으나 민감 부문인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는 10년 유예를 확보하였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차관련 세제는 협정상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배기량별 세제에 국한되어 자동차 세제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 경감은 그간 우리 소비자와 업계도 요청해 왔으므로 우리 자체적인 제도개선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도 배출가스기준과 관련하여 새롭게 평균배출량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하는 등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존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제도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문은 한-미 FTA를 통해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혜택과 대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산지 관련 우리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그간 양국간 주요 통상 마찰의 원인이었던 우리 세제, 환경기준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해결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다.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반덤핑 발동 규정 강화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시장을 겨냥하였고 그 전략이 성공한 경우에는 대량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의 공세에 대응하여 미국 경쟁업계는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반덤핑제소를 남발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하게 발동되었다.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덤핑행위와 같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국내 산업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었다기 보다 피해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우선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사례도 빈번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역협회의 연구 (2006년 6월)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1980 ~ 2005) 미국의 반덤핑 조치 발동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수출액이 373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동 기간 동안의 대미수출 전체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덤핑 발동 요건이 WTO가 제정한 일반 요건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반덤핑 발동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완화조치로는 ① 개별 품목의 덤핑률이 마이너스인데도 합산시 이를 0으로 계산하여 반덤핑 조치 발동 대상품목의 덤핑률을 과대 산정하는 제로잉 (zeroing)의 금지, ② 덤핑률과 산업 피해율중 작은 값을 반덤핑관세로 부과하는 원칙인 최소부과 원칙 (Lesser Duty Rule)의 적용, ③ 2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때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누적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피해의 비합산 (Non-cumulation) 조치의 적용 등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반덤핑 규정 개정 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국 무역구제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비합산조치를 협정문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 개시전 사전협의, 가격인상약속/물량합의의 활성화,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운영,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무역구제위원회 및 반덤핑 요건 강화등의 반영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가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시 우리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라. 원산지/통관

우리측은 8차례에 걸친 공식 실무협상 및 최종 고위급 회의까지 일관되게 미측에게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 수용을 통한 개성공단제품의 특례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역외가공지역지정을 위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라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미측은 협상기간 내내 FTA의 효력이 비 당사국에게 미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며 우리측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려 했다. 특히 협상기간 중 북한의 핵실험

(2006년 10월 9일)과 노동-인권문제를 중시하여 개성공단사업에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점을 강조, 개성제품 한국산 인정 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없음을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측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을 지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유무역지대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지역의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2. 농업분야 :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차이 조정

한·미FTA 협상에서 농업은 아주 쟁점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반해 우리 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주들이 노령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농산물 관세양허 협상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입장을 천명하면서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은 제외하고 여타 민감도가 높은 품목도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5월 중순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1차(6월), 2차(7월) 협상을 통해 양측의 주요 제도 및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협정문에 우리 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려 했고 미국 측은 수입쿼타 관리방식을 상세하게 규제하려는 입장을 보여 양측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도 양국간 위생 및 검역관련 기존 접촉창구를 유지하자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위생 및 검역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여 입장차이가 상당하였다. 상품의 양허방식에서도 우리 측이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은 제외하고 주요 민감품목은 예외적 취급(미정, Undefined)으로 분류하며, 최장 15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이라는 점과 민감 품목이라도 10년 이내 관세철폐라는 입장을 보여 양허 모델리티(modality)에 의견차이가 컸다.

이러한 이견 때문에 상품별 양허협상은 각자의 입장에서 만든 양허안과 관심 품목을 토대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 8월 15일에는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9월 개최된 3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4차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 양허안을 교환하였고 농업분야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미국이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여 동 내용이 통합협정문에 반영되었다. 5차 협상부터 민감 품목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협상(2007년 3월 26일 ~ 4월 2일)에서 품목별 양허내용을 확정하고 협상을 종결하였다.

<최종 협상결과>

최종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수입쿼타를 제공하였고,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는 국내에서 수확·유통되는 기간에 집중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절관세를 적용하였다. 사과, 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별도로 분리하여 장기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조치이다. 이는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관세(SSG)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사전에 피해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측도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라면(6.4%), 배(0.2%), 음료(0.2%), 쌀로 만든 주류(0.5%), 추잉검(4%), 간장(3%),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

목은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TRQ 제도>

TRQ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미국은 이 제도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모두 쿼터배분을 신청·배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TRQ 물량을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해서는 안되며, 국내산 구매조건을 전제로 배분하거나 가공업자에게 한정해서 배분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TRQ 관련 현행 제도가 공정한 무역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의 국영무역과 수입부과금(mark-up) 등은 국내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RQ와 관련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협정문에 한·미 FTA에서 신설된 수입쿼터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범을 마련하고 수입쿼터 적용 세번, 쿼터물량, 관리방식 등은 양허안의 부록에 해당 품목별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당초 미측은 선착순 방식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최종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방식도 가능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간 합의된 내용은 기존에 WTO 협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수입쿼터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서비스/투자 분야 : 개방폭과 속도의 조절

가. 서비스 분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또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TO나 FTA 서비스 협정에서는 UN 상품분류(CPC)상 3단위 대분류 108개 서비스 업종을 자유화추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업종별 국제교역형태에 대한 자유화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서비스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 시장의 개방폭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서비스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 미측에서는 미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에 준하는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개방이 필요한 분야인지를 우선 검토하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방속도를 조절하는 등 분야에 따라 개방폭과 속

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에 대해 개방수준이 낮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이번 한·미 FTA 서비스 분야에서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가 체결한 어떤 FTA보다도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유보의 분야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유인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의 선진기술이 도입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내생산 및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 정부조달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국이 조달시장 입찰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자국내 실적만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고, 중앙정부의 물품·용역 양허하한선을 현행 13만SDR(1.9억원)에서 7만 SDR수준(1억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허하한선 인하로 인한 추가개방 규모는 미국이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은 양허하한선을 US\$ 64,786까지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10만\$이하에 대해서는 "Small Business Set Aside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어서 개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양허하한선을 10만\$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미국은 BTO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조달절차와 내국민대우 등을 적용시키자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기반시설을위한민간투자법'상 개방(민간투자법 제2조 11항)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BTL사업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내국민대우 등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협상 막바지까지 BTO사업의 개방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유지하다가,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BTO(BTL포함)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예외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조달의 형태를 갖추어 구매하는 경우 학교급식용 식자재에 대해서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사안은 GPA 개정협상에서도 제기해 놓은 상태이나 GPA에서는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요구를 관철시켜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Working Group에서 추후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GPA에서 개방된 37개 주정부 외에 나머지 주정부의 개방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주정부를 FTA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GPA수준을 유지하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측 5개 공기업(인천공항공사 등 5개)의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만약 미국이 주정부를 제외하면, 우리도 공기업을 제외한다고 대응함으로써, 미국이 우리의 공기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실질적으로 철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FTA협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현재 개방되어 있는 미국 37개 주정부의 조달규모는 전체 주정부 조달시장의 70%에 이르러 주정부 추가개방의 실익이 적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GPA에서 양국은 이미 주정부(미:37개, 한:15개)와 공기업(미:10개, 한:18개)을 상호개방하고 있음)

나) 금융분야

한·미 FTA협상 이전부터 우리 금융·자본시장은 OECD가입과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된 상황이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면 개방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도 유수의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런 우리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이번 한·미 FTA에서는 최초로 상업적주재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개방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폭넓은 개방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상업적주재 없이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거래(cross-border trade)의 경우에는 국내에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소비자보호, 금융감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보수적인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했다. 이

번 한·미 FTA에서 우리가 국경간거래 개방을 약속한 업종은 우리 현행법에서도 대부분 개방되어 있으며 개별 소비자와는 무관한 금융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항공보험,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행정지도를 서면에 의해 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은 인정받되 이들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부실가능성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방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확보하였다.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로, 협상초반 미측은 이는 자유로운 자금이동 보장의무(transfer)에 위반된다고 하며 협정문에 반영시킬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우리 경제의 높은 개방도 및 해외 의존도, 지정학적 위치, 외환위기 경험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협정문에 일치하는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예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을 협정의 예외로 인정받음으로써,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방송, 영화 등 시청각 서비스

미국은 시청각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대부분의 시청각 분야에 대해 이미 개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우리측에게는 방송·영화 등 시청각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방송은 협상 개시 이후 미국의 개방압력이 가장 컸던 분야 중 하나였다. 미측은 외국방송에 대한 더빙의 허용 요구에서부터 방송법령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방송쿼터에 대한 철폐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IPTV와 같은 신미디어에 대한 개방을 지속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과 국내적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개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였다. 최종 협상결과, 미측의 더빙 허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송쿼터 중 장르별 쿼터 일부(PP 등 비지상파에 한정)를 축소(영화 : 25→20%, 애니메이션 : 35→30%)하였으며 특정국가의 비중을 제약하는 1개국 쿼터를 일부 완화(현행 60→80%)하였다.

PP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지분 제한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하였으나 직접지분 제한은 유지토록 하였다. 다만, 현행 방송법상 규제가 없지만 제작비 쿼터, 외주제작 쿼터 및 주시청시간대 쿼터 등에 대하여 미래유보함으로써 향후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국산 콘텐츠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주문형비디오, Video on demand)를 포함하여 IPTV 및 양방향 방송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와 제도 틀 변화에 따른 규제권한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방송 디지털 융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영화(스크린쿼터)의 경우 협상 개시전에 우리측의 축소 결정(2006년 1월, 146일→73일)이 있었고 이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 축소·시행은 FT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향후 한국영화 위기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끝까지 미래유보를 주장하였으나 현행유보로 최종 타결되었다.

한편, 인터넷상의 영화와 같은 VOD방식을 통한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하여는 비록 현재 관계법령상의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국산 시청각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쿼터와 같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유보하였다. 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라) 저작권 분야

우리측은 한·미 FTA 저작권 분야의 협상에서,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의 선진화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저작물 이용 환경에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저작권 협상에 있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협상 시작 이전부터 미·호주, 미·칠레 FTA 등 기존 선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함으로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미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수용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를 들 수 있다.

일시적 저장이란 컴퓨터상(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일정 시간 후 또는

전원을 끄면 자동 삭제되는 것과 같이 콘텐츠의 저장이 지속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미국은 이러한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자에게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을 요구했다. 우리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형태가 될 것이므로 복제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 '일시적 복제권'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권이 누리꾼의 검색·다운로드 등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명시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자가 적용하는 조치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예 : 암호화 조치) 및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예 : 온라인상 '복제방지 장치')로 나뉜다. 현행 우리 저작권법은 이용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만 두고 있는데 미국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정당한 권한 없이 뚫거나, 무력화하는 행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수용하면서, 적절한 관련 예외 및 필요시 추가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인터넷 상 정보 접근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들 수 있다. EU를 비롯하여, 호주, 싱가포르 등 전세계 70개국 이상이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 점 및 국내 저작권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칠 과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를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출판업자 등의 기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동 기간만큼 로열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당초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국내 저작물 이용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수용하지 않은 쟁점으로는 병행수입 금지와 비위반제소의 지적재산권 분야 포함 요구를 들 수 있다. 병행 수입 금지란, 국가간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여 저작물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점과 FTA의 근본 취지에 반함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결국 이 요구를 철회하였다. 한편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도 기업이 당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대

하고 있는 이익이 있을 경우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비위반제소에 대해 미국은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위반제소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였다.

마) 통신서비스 분야

통신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국 기업과 투자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한도(20%)가 우리나라(49%)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49% 직접투자 제한을 현재 국내 제도대로 유지하였고, 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개방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에서 KT에 대한 외국인 최대주주 금지 조항을 관철하였다.

< 표 6-1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비교 >

구 분	한 국	미 국
직접투자 제한	49%	20%(무선국허가사업자)
간접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1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의제 · 동 법인이 보유한 통신사업자 지분을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으로 산입 	25%까지 허용 (단, 공익성심사 통과시 100% 허용)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상호균형적인 개방수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하였다. 미국 제도는 미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측도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KT와 SK텔레콤은 간접투자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관철 하여 국가안보 및 통신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기타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현행 지분한도 49%에 도달한 사업자가 거의 없어 경영권 인수 등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국내에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 투자는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투자를 통한 100% 지분보유 허용은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소비자 편익제고, 주파주의 효율적 이용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표준 정책 추진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논쟁을 벌였던 동 쟁점에 대하여, 양국은 정부의 기술표준 정책추진 권한과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점을 도출하였다. 정부의 기술표준정책이 공공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 정부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무선분야에 대해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국내외 서비스 접근권 보장, 인체건강 보호, 법집행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가 부과하는 기술요건은 가급적 성능에 기반하여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술표준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바) 우체국 보험 기타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우체국보험이 보험업법 및 보험사업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과 세금 면제 등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차별적 특혜라며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운영 목적(공익위주-영리), 주체(국가-주식회사)가 서로 달라 불가피하게 적용법률, 감독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과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은 6차 협상 직전, 우체국보험 관련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시한 부속서 문안을 우리측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였다.

※ 미측 부속서 주요내용

- 민영사업자보다 경쟁적 혜택부여 금지
- 판매 대상을 '지역적·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제한
- 금감위의 규제권한(우체국금융위협관리위원회 등 위원의 과반수 임명 등)
- 보험상품의 현행 가입한도액 증액금지 및 신상품 개발 금지 등

양국은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감위에서 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 및 상품기초서류를 심사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생명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특급배달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은 특급배달서비스시장의 개방, 우정사업본부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독점서비스의 수익으로 특급배달서비스에 대한 지원 금지, 국제서류 및 국내서류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급배달서비스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당국의 현행 사업수행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협상결과, 우편독점 예외 범위에 국제서류를 포함하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고, 우정당국의 사업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한 우편물 운송 및 공익 근무요원의 우편업무 지원 등 현행 제도를 인정하였다.

나. 투자분쟁 해결절차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에서는 투자분쟁(투자자-국가간 분쟁, Investor-State Dispute)이 협상 초기부터 국내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동 제도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하였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즉, 상대방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차별한다거나,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 또는 국유화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 및 8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도 2100여개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 제도가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을 통하여 이미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단지 협상 상대국이 '법적 송사'가 만연한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품무역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FTA에 있어서, 상대국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투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협정 의무 위반 시 중립적인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보장은 상대국 투자활동 및 자산 보장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인 것이다.

물론 동 분쟁해결절차가 협정에 포함되는 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 분쟁해결절차는 중국, 아세안 등의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우리측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실 외국인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공정책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면,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분쟁절차에 제소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간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투자분쟁절차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건도 피소된 바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를 감안하고, 투자분쟁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가능한 한 제한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상하였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일체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로 재산권의 가치가 거의 박탈되는 경우를 말한다.

NAFTA를 포함한 기존의 대부분의 투자협정들이 간접수용 시에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간접수용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실제로 NAFTA 체결 이후 다수의 공공정책에 대하여 간접수용을 주장하는 분쟁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NAFTA 체결 이후 발생한 49건의 분쟁 중 현재까

지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것은 멕시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메탈클래드 사건 1건에 불과하다.

미국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04년 투자협정 모델 문안을 제정하면서 간접수용을 직접수용과 동등한 재산권 박탈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한하고, 보건, 안전, 환경 등의 공공복지목적의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은 간접수용이 아님을 규정하였고,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동일한 문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측 문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과 민감한 정책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정책과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예외적인 허용범위도 더욱 축소할 것을 미측에 제안하였다. 이러한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미국 업계에서는 한미 투자협정이 기존 미국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미국 투자자에게 보장되었던 보호수준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여 현존하는 투자협정 중 간접수용의 범위를 가장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그간 투자중재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일부에서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제기하여 온 점을 감안, 한·미 FTA의 투자중재 심리절차와 제출 서류 일체를 대중에 공개하기로 미측과 합의하였으며,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였다.

제 7 장 국내 갈등관계의 조정

1. 한·칠레 FTA : 낮은 경험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가. 한·칠레 FTA 반대논거와 대응

한·칠레 FTA 협상추진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00년 봄을 시작으로 전국농민총연맹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반발이 확대·심화되었다. FTA 체결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개방적 정서가 심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 우려가 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칠레 FTA를 반대한 주요 계층 또한 농민들이었다. 한·칠레 FTA 협상과 비준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반대논거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칠레가 세계 3대 농산물 수출국이므로 칠레와 같은 농업 강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양국간 농업여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과일농가 중심의 농업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식량기구(FAO)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 24위의 농산물 수출국가로 전세계 농산물 수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78%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칠레FTA 협정에서는 칠레 수출 농산물의 62%를 차지하는 사과, 배, 성수기 포도를 완전히 제외했다. 일부 과수분야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나 그 규모는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쳐 10년간 약 6천 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결코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규모이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방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예상 피해액의 두 배에 이르는 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TA지원특별법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을 마련했고, 10년간 119조억 규모의 중장기투융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칠레시장은 협소하고 구매력이 작아 교역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등 FTA를 통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칠레 FTA를 통한 양국간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 및 수입규모는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역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예측은 전혀 맞지 않았다.

한·칠레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칠레의 과거 FTA 파기 사례를 들며 협상 철회를 요구기도 하였다. 칠레는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두 건씩이나 파기하였던 전례가 있으므로 우리도 한·칠레 협정을 파기하거나 DDA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칠레의 FTA 파기사례는 칠레·뉴질랜드, 칠레·파나마 FTA였는데 이 두 개의 FTA는 협상단계에서 중단된 FTA였다. 따라서 위 주장이 제기될 당시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 대통령의 참석 하에 서명까지 마친 한·칠레 FTA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나. 갈등의 심화

<계속된 반대시위>

시위의 양상은 처음에는 2000년 포도, 사과 등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포도, 사과’ 등의 협상배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2001년에는 전농 등 농민단체 중심의 ‘한·칠레 FTA 중단’, ‘쌀 수입반대’ 등 농업 및 정치 이슈로 발전하였다. 2001년 11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농민대회가 열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과격시위가 벌어진 이후 협상과정에서 비준에 이르기까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경실련, 전국민중연대, 노조 등이 합세하여 ‘반 WTO’, ‘반 BIT’ 등 한·칠레 FTA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슈에까지 반대시위가 확대되었다.

시위형식도 상경투쟁, 단식투쟁, 묘제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반대 농민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국에서 상경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에서 서행 운전하거나 갓길 시위를 벌여 톨게이트를 비롯한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에 극심한 혼잡을 빚게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와 단식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되는 시점마다 국회 앞에서는 강도 높은 농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국회 쪽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이들의 시위는 철야시위로 이어지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지역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영을 차례로 돌며 한·칠레 FTA 비준안 철회를

지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2003년 12월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영에서까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한-칠레 FTA 찬성자에 대한 보복적인 단체행동도 이루어졌다. 2002년 3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칠레간 논의되고 있는 FTA에서 핵심 중 하나인 농업 분야 개방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하는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거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실제 2003년 6월 당시 농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비준 반대 서명을 한 국회의원은 140여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과반수를 넘기도 하여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3년 9월 11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일어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의 자살사건은 한-칠레 FTA를 포함한 농업시장 개방 반대 여론을 자극하였다.

농민단체들은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나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연석회의 등에 불참하며 비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도 비준안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었다. “先 농민단체 설득, 後 비준”, “先 보완대책, 後 처리” 등 비준에 대한 유보적 주장이 계속되었으며, 안건처리 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표결방식을 놓고도 오랜 기간 마찰을 빚었다. 농촌출신 의원들은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통해 본회의 표결처리를 저지하였고,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30여명이 무더기 반대토론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04년 2월 9일 세 번째로 시도된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자 로이터, A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 농민들이 과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시장개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관련 언론보도>

◆ 해넘기는 한 · 칠레 FTA.. 표앞에선 여야도 국익도 없었다

◇ 국회가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5개월 넘게 논란을 벌였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 국회는 29, 30일 이틀간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번번히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실패했다.

○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다. “표심” 앞에선 도 · 농 출신의 구분만이 있었을 뿐 여야가 없었고, 국익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 정부측은 세계적인 개방화 시대에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 외면은 국가 신용도 하락은 물론 대외무역 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이날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 처리가 유보된 직후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을 맺어 놓고 국회 비준을 못받아 1년 이상 FTA가 발효되지 못한 전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어느 나라가 정치 논리에 통상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전국농민연대 소속 회원 1천5백여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앞에서 FTA 비준 동의 반대 집회를 이틀째 열었다.
(2003.12.30. 한국경제)

<FTA 찬성의 목소리>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FTA 반대주장과 달리, 전경련, 무역협회 등 재계는 한·칠레 FTA 비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재계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처리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더 이상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3년 11월 4일에 농민단체 대표들과 첫 모임을 갖고 농민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였다. 이 모임은 2003년 7월 국회에 제출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재계가 국회비준에 대한 농민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제계와 농업계의 상생을 위해 1社1村, 국산농산물 애용 등의 공동사업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걸쳐 농민단체와 농학계에서 한·칠레 FTA 비준을 찬성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한·칠레 FTA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2003년 11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동의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농촌출신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간의 격론 끝에 표결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2003년 11월 13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농민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농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견지해 왔고, 국회의원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표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며 “하지만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농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매서운 국민의 소리도 담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29일에는 서울대와 강원대 등 국립대 농대교수로 구성된 ‘농업을 사랑하는 농학계 대학 교수 모임’이 정부가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 부지침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칠레 FTA 비준의 조속처리를 건의하였다. 이들은 FTA 비준이 맹목적 반대 속에 지연될 경우 국익 훼손은 물론 농민들도 아무 소득 없이 희생될 것이라며, 정부지원금이 과거 퍼주기식 투자 대신 실질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에 올바르게 집행될 경우 한국 농업도 FTA 체제 하에서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선, 중앙, 동아 등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FTA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여 통상국가로서 FTA 체결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한·칠레 FTA의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촉구하는 한편, 협정 발효시 농업부문 등 피해부문에 대한 지원대책 및 구조조정을 위한 투융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부대책 수립을 주장하였다.

<직접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접촉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화를 촉구하는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계속하였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2003년을 넘겨 처리가 지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6일과 7일간에 걸쳐 농민단체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비준동의에 대한 협조를 직접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칠레 FTA 비준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FTA 비준이 영구히 미룰 과제가 아니라면 정부의 농정대책을 믿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며, 우리처럼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에서 한·칠레 FTA 비준을 거부하면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을 꼭 지켜낼 것이며, 신뢰와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2004년 1월 8일에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만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지원해 줄 경우 좀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농촌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농민들의 반대는 줄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네 차례에 걸친 본회의 상정 끝에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다. 보완대책의 마련 과정

<보완대책의 자원 : 예산 vs 기금>

2003년 2월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써 한·칠레 FTA협상은 종료되었다. 정부는 국회 비준 이전에 보완대책을 확정해야 한다는 ‘先대책, 後비준’ 원칙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자 우선적으로 협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곧바로 착수했다.

농민들은 믿을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보완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과거 선례를 두고 볼 때 개별국가와 협상을 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만든 경우가 없으며, 법만 만들고 내실 없는 대책이 될 경우 오히려 정부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법을 만들기로 했으나 법안의 주관부서를 두고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FTA에 농업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가

입법 주관부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농림부는 FTA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 예산구조만 복잡하게 만들므로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은 예산을 증액시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상당 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 대책수립을 지연시켰고 비준 시기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FTA 이행 특별법안'이 2003년 7월 23일 발의되었다. 동 법안에는 기금설치가 명문화 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FTA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농업분야 피해규모 논쟁 : 140억원 vs 2조 4천억원>

협상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연구방법이나 연구에 쓰이는 모델, 가정에 따라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한·칠레 FTA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협상이 종료되고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국내 농업의 피해 규모가 필요했다.

한·칠레 FTA의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협상 발효이후 10년간의 피해액을 추정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피해액이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추정한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2,579억원, 한양대학교는 5,860억원이라고 추정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피해 규모와 보완대책 수립과정에서 논쟁을 확대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피해액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협상이 발효될 경우 해마다 2조 4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피해액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조 4천억원의 피해중에는 축산 피해가 1조 2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피해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 칠레는 축산물을 자급하거나 아주 작은 물량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있어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실사 칠레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증가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다른 나라 축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 이것이 FTA로 인한 무역이전 효과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중 가장 피해액이 크게 추정된 한양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융자 지원, 생산자조직의 유통기능 강화 지원 등이 있었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 및 경영이양지원도 포함돼 있었다.

〈관련 언론보도〉

- ◆ UR·칠레 FTA 때도 망한다 했지만... 농업체질 오히려 강해졌다.
 - ◇ (한 국책연구소는) 93년 12월 'UR 타결 세미나'에서 570만명이 넘는 농촌인구가 2001년이면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42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세 배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그러나 10년이 더 지난 농촌 실상은 판판이다. 붕괴는 커녕 농업 체질은 오히려 강해졌다. 쌀 자급률은 100%가 넘었다. 쌀을 지키느라 쇠고기·돼지고기 시장을 열어 축산 농가가 줄도산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 농산물 무역적자가 늘긴 했지만 (국책연구소) 전망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우려했던 농촌 탈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도시 빈민은 오히려 감소했다.
 - ◇ 2003년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자 농민단체는 또 들고 일어났다. 칠레산 포도, 복숭아, 키위 때문에 국내 과일 농가가 전멸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기관들은 농민 피해액을 3000억원~5800억원으로 추산했다.
 - 정부는 농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119조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놨다. FTA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칠레산 포도, 복숭아, 키위가 밀려와 소득이 80%이상 감소한 농가엔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준에 맞아 보조금을 타간 농가는 한 가구도 없다. 국내 포도, 복숭아, 키위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가격도 3년전보다 더 올랐다.
 - ◇ FTA로 농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UR과 한·칠레 FTA의 경험에 비춰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히려 과장된 공포감으로 정부는 세금을 농촌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했다.
 - 그리고 UR 협상이 체결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한국 농업은 여전히 쌀 시장 개방앞에 떨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2007.4.4. 중앙일보 1면)

<점점 늘어나는 지원규모>

정부의 보완대책은 2003년 7월16일 발표되었고 이에 앞서 비준안은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FTA이행특별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양새를 갖추어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국회가 여름휴가 기간이었으므로 비준안이 제출될 당시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비준안이 좀 더 일찍 제출돼 2003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정부 내에서 법제정 문제, 보완대책 등에 대한 이견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국내 수용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농업인단체들은 눈앞에 닥친 총선을 호기로 강력한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였으며 다음해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농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준에 반대하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었다. 국회의 분위기는 농민을 위한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농민단체 10 대 요구사항

1. WTO/DDA 농업협상·쌀 수입 개방반대
2. 통일대비 쌀 자급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농업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
4. 한·칠레 FTA 비준 중단 및 DDA 농업협상 이후 논의
5. 상호금융부채를 포함한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6. 신경분리 조기이행 등 근본적인 농업협동조합 개혁
7.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8. 직접지불제 확충과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조기 제정
10.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

7월 16일 발표한 정부대책은 당초 농업 피해 추정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8천억원 지원대책 규모였으나 농업인단체들이 정치권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10월 4대 특별지원법을 추가대

책으로 제시하게 된다. 4대 특별지원법은 'FTA지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부채특별경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특별법'이다.

FTA지원특별법은 2003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FTA 피해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농어촌 특별세법은 2004년에 종료되는 농특세를 10년 더 연장해 농촌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농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 및 상환 연기,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등을 담고 있었으며, 농어업인삶의질향상은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지역개발 등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비 지원, 주택·교통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

또한 그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FTA확산, WTO/DDA협상 등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대책 발표에도 농업인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회는 비준안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2차 추가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부채대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초 8천억원 규모이었던 FTA이행지원기금의 규모를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2월 10일 비준안을 상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19일 4대 특별법안 중 농어촌복지향상법과 부채경감법을 통과시켰고 농특세법은 재경위를 거쳐 12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3년 12월말, 2004년 1월초에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국회내부 동향에 대해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처리를 저지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 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농업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FTA특별기금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당초 1,600억원이었던 2004년도 기금 출연액을 5천억원 증액시키고 부채경감에도 부채 10% 상환 조건을 폐지하는 등 세 번째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연이은 추가대책 마련과정에서 정부가 당초에 공표한 '추가대책이 없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함에 따라 공신력에 손상을 입었다. 반면, 농업인단체들은 반대를 통하여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격렬한 반대시위를 하였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더 심하게 전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표 7-1 농민단체 요구 및 정부의 대책 내용〉

① 1차 요구수렴('03.10월 이전) 및 대책 내용

중장기투융자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확정
한·칠레FTA 지원대책 마련	⇒	FTA이행특별법 제정, 향후 7년간 기금 8천억원 조성
농어촌 복지향상	⇒	삶의질향상법 제정, 2013년까지 17조원 투자
농특세 연장	⇒	농특세법 개정(10년 연장), 향후 10년간 20조원 재원 확보

② 2차 요구수렴('03.11월) 및 반영 내용

FTA지원기금 증액	⇒	기금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
부채대책 범위 확대 ◦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인하 ◦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 신규 정책자금 금리인하 ◦ 연대보증 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	부채경감법 개정안에 모두 반영 ◦ 6.5% → 3% ◦ 6.5% → 3% ◦ 4% → 1.5% ◦ 4% → 3% ◦ 3년 거치 7년 상환 → 3년, 17년

③ 3차 요구수렴('04. 1월) 및 반영 내용

FTA지원기금 조기 조성	⇒	금년 기금출연액을 국회와 협의, 증액 예정(1,600억원→5,000억원)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인하 혜택을 위한 10% 선납조건 폐지	⇒	부채경감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2. 한·미 FTA : 조직화된 반대에 대한 설득과 조정

가. 한·미 FTA 반대논거와 대응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양보했다? : 4대 선결조건 논쟁〉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의 4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상도 시작하기전에 다 수용해버렸는데 이제 뭘 가지고 협상할 것인가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 논란이다.

모든 협상은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협상 당사자들간에 의제를 조율하고 협상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사전협상의 단계를 거친다. 사전협상 단계에서 협상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련의 조치를 선결조건이라고, 또 굴욕적인 양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국익을 침해했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4가지 사안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문제는 우리가 미국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한국에 1만대 이하 자동차를 파는 모든 회사에 유예기간을 똑같이 2년 연장해 준 것이다. 이는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 대 수입비율이 92대 1(2005년 금액기준)에 달하는 심각한 교역불균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만 관세를 철폐한 것도 아니고, 미국 자동차만 세금 면제 혜택을 준 것도 아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상쟁점은 그대로 남아있다.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 및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안정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가능여부를 1년여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쇠고기 가운데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홍콩은 이미 한국에 앞서 수입을 재개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측이 약가 재평가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으며 우리 측은 '신중한 검토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다만, 스크린쿼터는 최근 우리 영화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민들의 한국영화 선호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영화의 자립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축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FTA 협상전에 이미 대통령이 2003년 11년 21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관계자와 직접

면담하고, 2004년 6월 3일에는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서울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의 만찬을 통해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결국 소위 4 대 선결조건 중 자동차 배출가스와 쇠고기 수입은 FTA가 없었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통상현안이었고, 의약품은 구체적인 합의조차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위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굳이 이를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DP가 얼마나 높아지나? : 경제적 효과 논쟁>

정부가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직후부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우리 GDP가 최대 약 1.99%²⁾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KIEP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업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생산성 1% 상승 가정)까지 추가적으로 감안할 경우에는 GDP가 최대 7.7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당초 1.99%에서 7.75%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야당의원은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KIEP에 연구모형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2) KIEP가 제시한 한·미 FTA의 GDP 증가의 의미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FTA 체결후 우리 경제가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 동안 증가한 총량의 수치이며 매년 이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 7-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정태적 효과(단기)	자본축적 효과 (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금액 기준)	0.42% (29억 달러 증가)	1.99% (135억 달러 증가)	7.75% (352억 달러 증가)
고용 (인원 기준)	-0.51% (85천명 감소)	0.63% (104천명 증가)	3.30% (551천명 증가)

주 1) 정태적 효과는 양국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나타나는 단기효과를 의미

2) 자본축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함께 투자 및 자본축적으로 인한 중장기 효과를 의미

자료 : KIEP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KIEP의 연구결과 발표 당시(2006년 4월)에는 협상이 초기단계에서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최종 협상결과를 알 수 없었고, 설사 최종 협상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해도 복잡한 경제 현실을 몇 가지 모형으로 단순화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KIEP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분석방법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KIEP는 한·미 FTA의 최종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은 완전개방, 농업은 80% 개방, 서비스는 20% 개방'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또한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각각 1%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GDP 증대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자. FTA를 체결하면 단순히 관세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세 철폐 효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의 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근거로 KIEP는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자료들과 미국 자료 등을 사용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무역증대 효과와 함께 생산성 효과까지 감안하여 추정하는 분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한·미 FTA 타결이후 최종 협상결과를 토대로 2007년 4월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 GDP 증대규모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할 경우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KIEP의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감소했다.

<농업의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 1.1조원 vs 8.8조원>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농업 강대국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생산액이 약 1조 1,500억원 ~ 2조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01년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약 8조8천억원의 피해를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반대하는 측은 주장하는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석한 경제모형의 가정이나 데이터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모형에서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 품목들도 관세 부분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상당히 두어 점진적으로 시장을 여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는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1995년의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류, 담배, 음료 등의 피해까지 포함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과장되어 나타난 측면이 있다.

나. 갈등의 심화

<조직적인 반대 집단의 등장>

정부의 한·미 FTA 출범선언 이후의 뚜렷한 특징은 반대집단과 찬성집단별로 조직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선 반대집단의 조직화에 기폭제가 된 것은 2006년 1월 26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이다. 영화인 등 유명인의 1인 시위 등이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반대집단들은 이를 기회로 소위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이전에 발표되었던 「의약품 가격인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를 정부가 한·미 FTA 추진 대가로 미국측에 미리 양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후 2월 1일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가 조직을 개

편하여 재출범한데에서 시작한다. 이어 2월 15일에는 113개 단체가 '스크린쿼터사수,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문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대책위들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아래 함께 모인 형태로 출범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8일 발족하였으며, 농대위, 민주노총, 영화인대책위, 교수학술공대위, 보건의료공대위 등 11개 부문별 대책위에 총 270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조직화 경향은 찬성입장을 가진 단체들에서도 나타났다. 찬성단체들은 주로 한·미 FTA의 수혜집단으로 간주되는 기업대표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대표격인 조직은 '한·미 FTA민간대책위원회(이하 민대위)'이다. 민대위는 2006년 4월 18일 경제4단체(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협) 회장, 농협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명을 공동위원장으로 36개 단체의 참여하에 출범하였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구성되었으며, 참여단체 중 농협은 당초 한·미 FTA 추진에 반발해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참여단체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민간대책위원회 참여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또 하나의 특징은 찬반단체의 조직화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식출범전인 2004년 12월(한국갤럽)과 2006년 1월(KDI)에 실시된 여론조사시 한·미 FTA에 대한 찬성비율은 각각 80.4%와 88.9%에 이르렀다. 그런데 스크린 쿼터 축소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찬성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비중이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5월 한겨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시 찬성이 58.1%, 반대가 41.9%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언론보도>

2006년 6월 5일 제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으로서 한·미 FTA는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돌입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각 단체 및 기관간의 갈등양상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갈등심화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상파 TV 방송사들의 미국과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이다. 협상개시에 앞서 6월 4일에 KBS 스페셜은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을 방송하였고 7월 4일 MBC PD수첩은 '참여정부, 한·미 FTA의 뒷에 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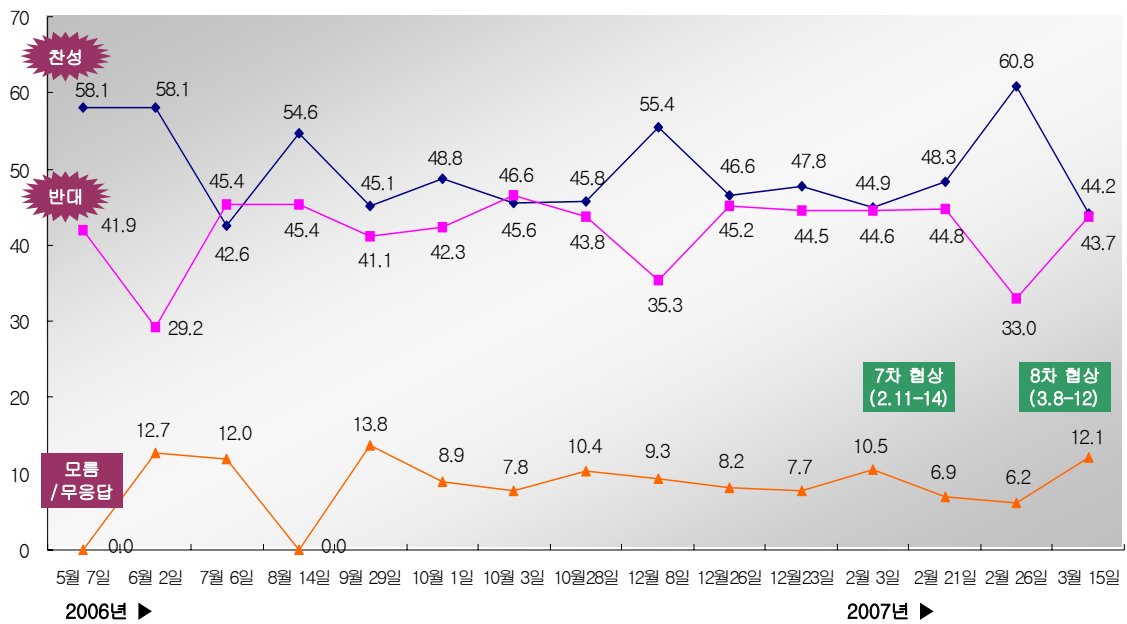
를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한·미 FTA 추진의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캐나다, 멕시코 등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양극화 현상, 한·미 FTA의 졸속추진 등을 주장하며 FTA 반대론자들의 일방적인 시각만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7월 7일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PD수첩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다. 그러나 범국민 등 반대단체들은 한·미 FTA 반대논리를 되풀이하며 ‘한·미 FTA반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그 결과 한동안 여론조사에서 반대비율이 찬성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론이 한·미 FTA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찬반 주장의 내용이 갖는 차별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인한 광우병 쇠고기의 반입우려’,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의료체계의 훼손 가능성’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한·미 FTA와 연결지어 반대 여론을 조성하였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국민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반대논리에서 벗어나 균형된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였다. 2006년 8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우선 농업분야 등 9개 국내보완대책 필요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협상의 경과에 따라 보완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06년 8월 11일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외협상 못지않게 국민적 합의 등 대내협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론수렴, 정보제공, 사회적 갈등의 조정, 국회활동지원 등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삼았다.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정부의 추진의지표명과 동위원회에 대한 관심, 위원회의 대국민 활동에 힘입어 지지여론이 증가하는 양상이 9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자료 <2006년> 5월 7일(한겨레), 6월 2일(한국일보), 7월 6일(MBC), 8월 14일(KBS), 9월 29일(동아일보), 10월 1일(MBC), 10월 3일(KBS), 10월 28일(코리아타임즈), 12월 8일(무역협회), 12월 26일(서울경제), 12월 23일(한국일보)
 <2007년> 2월 3일(한겨레), 2월 21일(한국사회여론연구소), 2월 26일(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월 15일(문화일보)

<그림 7-1 한·미FTA 찬반여론 변화추이>

한편, 국회도 2006년 6월말에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진행상황과 대내 이해단체간의 갈등조정 상황을 국회차원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 후 위원회의 위원수가 30명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4월 6일 제2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반대 집회·시위의 폭력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대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국내에서의 시위에 그치지 않고 강행된 반대 단체들의 미국 원정시위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의 우려까지 자아내었다. 2006년 5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100여명의 원정시위대를 보내 미국내 반신자유주의 단체들

과 한·미 FTA 반대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은 5월 19일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를 중단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각 언론들도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불법시위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며 평화적·합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기를 요청하였다. 원정시위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 경찰국은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대처한다고 하며, 시위대의 자해 행위나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행위 등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중범죄로 다루겠다는 강력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걱정을 더했다. 워싱턴 한인 연합회, 워싱턴 교회협의회 등 워싱턴 지역 32개 한인 단체 대표들도 성명을 발표하여 "과격 시위시 잘못하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 피해는 당장 이곳의 동포사회가 겪게 됨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가능한한 원정시위 계획을 중단해 줄 것과 시위를 하게 되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 동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원정시위대는 백악관 거리 주변에서 경찰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시위를 진행하여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2006년 9월 10일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공식협상에 반대하는 원정시위에서는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 끝에 한국인 시위대 9명이 연행되어 2시간여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정부와 국민들은 원정시위에 나선 일부 시위참가자의 돌출행동 가능성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관련 언론사설〉

◆ 반 FTA 원정시위 계획 중단하라

◇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6월초 워싱턴 원정시위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가 단호하다. 5개부처 공동담화문은 원정시위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함은 물론, 미국과의 또 다른 협정인 비자면제협정의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장·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 공동담화문이 밝힌대로 전세계에 걸쳐 180개 이상의 FTA가 체결돼 있고,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FTA 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더욱 수출로 먹고살아야 할 한국으로선 FTA는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조건이다.

○ 반 FTA 원정시위는 그 방법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에 앞서 반대 취지부터 무모하다는 우리의 판단도 그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한국의 원정시위대가 벌인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반대 시위는 한국사회 일각의 그늘진 이미지를 세계 시민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극성스런 불법·폭력시위와 현지 경찰에게 연행되는 장면을 전세계에 방영되게 한 원정시위는 무책임한 반세계화 시각만 드러냈을 뿐이다. 더욱이 이번 원정시위는 세계의 정치 1번지 워싱턴이 무대여서 국익에 미칠 유·무형의 피해는 홍콩시위에 비할 바 아니다.

◇ 한·미 FTA가 체결되면 GDP가 7.7%, 또 고용은 55만명이 늘어난다. 반대론자의 우려대로 농업과 서비스시장 및 금융산업 등에 일정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국익의 무게가 어느 쪽이냐가 선택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아 정부의 협상력을 분돋을 때다. 무모한 시위로서 세계의 빈축을 사고, 그로써 나라 이미지를 깎아 내릴 때는 단연코 아니다.

(2006.5.20. 문화일보)

◆ FTA 원정시위 폭력 · 불법 걱정된다

◇ 우리는 이런 식의 행동이 협상의 유리한 전개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정부가 지난 주 재경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원정시위 자제를 당부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자칫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우려를 살'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 물론 운동본부는 '결코 불법시위를 준비한 바 없으며, 시종일관 평화적인 합법시위를 진행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다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한국 시위대가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폭력 시위로 국제언론의 주목을 받고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한 전례를 생각할 때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개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관계자들이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외국에 가서라도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FTA 반대라는 소기의 목적조차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일말의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2006.5.23. 한국일보)

양국간의 3차 협상이 끝나고 2006년 10월에 접어들어서는 찬반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한·미 FTA 관련 이슈나 여타 사회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집단들도 새로운 반대논리 개발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집회·시위가 폭력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06년 11월 22일 서울 등 전국의 13개 도시는 한·미 FTA 반대 집회, 민주노총 파업결의 대회 등 동시다발적 시위로 얼룩졌다. 이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는 전국적으로 2006년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인 7만 3천여명이 참여하였고, 일부 시위대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관공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당초 5,000명이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이를 불허하자 행사인원 1,000명, 행진거리 축소로 재신고 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신고내용을 지키지 않고 점거차로를 1개에서 점차 늘려 4개 차로를 완전히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시위대 500여명이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담장에 심어진 향나무 등을 불태웠고, 각목과 파이프 등으로 도청 정문, 청원경찰실 창문 등을 파손했다. 광주시청 앞에서 국민총궐기를 끝낸 시위대 일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깡통을 투척하면서 시청사에 진입을 시도했다. 충북, 강원, 광주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도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경찰은 이 집회 이후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민 운동본부는 1차대회에서 발생한 사태가 우발적인 사건이며 평화적인 집회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 11월 29일에 2차 대회, 2006년 12월 6일에 3차 대회, 2007년 1월 16일에 4차 대회를 각각 강행하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자 합법적인 다른 집회장소를 빌려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성 점거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시위대와 경찰의 격한 몸싸움과 도로점거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으며, 교통체증에 항의하는 시민과 시위대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 언론사설>

◆ 고질적 무법 · 폭력 시위 강력 처벌하라

◇ 전국에서 벌어진 폭력시위 사태를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도심에서의 막무가내식 불법 도로점거 등의 시위행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자성의 뜻을 밝히고 신고사항을 제대로 지킨 집회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준 바 있다.

○ 22일 시위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 전례를 떠올리며 준법시위 문화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졌다. 공공기물 방화, 파손에 죽창까지 등장한 곳곳의 폭력시위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대로였다.

◇ 이번 사태를 두고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경찰과,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득과 정책반영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일견 공정한 듯 보이는 이런 지적은 그러나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분산, 호도하는 것이다.

○ 경찰은 그 동안 과격시위에 적극 대처하면 폭력경찰로 매도 당했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시민불편을 외면한 책임회피로 비판 받아왔다. 이번 시위대응이 미숙했다 해도 운신의 입지가 극도로 제한된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득과 조정에 관한 한 이 정부의 무능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새삼 거기에다 책임을 묻는 것도 부질없다.

◇ 결론은 명백하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나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위주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달 말과 내달 초로 예정된 같은 단체 주관의 집회는 집시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 법과 사회적 준칙을 지킬 최소한의 의지도 결여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관용이 아무 순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은 지겹도록 증명돼 왔다. 지금은 한미FTA나 노동권, 교권 따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할 때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돼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법의 권위부터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번에도 어정쩡한 관용론이 통한다면 그건 정말 나라도 아닐 것이다.

(2006.11.24. 한국일보)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이 2006년 2월 3일 개시된 이후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시까지 1년여 동안 열린 한·미 FTA 반대시위는 340회에 이르며 26만여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총 15회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들은 초기에는 평화적 준법집회를 개최하였으나 2006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경찰 측의 준법집회 촉구를 위한 MOU 체결,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도심권 이외 집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관공서 방화, 기물파손 등 과격 폭력시위를 벌였다. 위 기간 동안 한·미 FTA 반대 집회 관련 사법처리자는 525명에 이르렀으며 경찰관리비용에만 28억여원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된 시위의 강행은 폭력시위 확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미디어리서치가 2006년 11월에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도심집회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찬성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격 시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한·미 FTA 바로 알리기 활동전개

찬반여론의 부침현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언론 등의 잘못된 보도는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06년 11월 20일 KBS 시사기획 '쌈'에서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도했을 때, 지원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 제소하여 반론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활동은 현장으로 찾아가 업종별 토론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한·미 FTA를 왜 해야만 하고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에 대해 민간이 스스로 토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역별 민간포럼구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온라인 상의 활동 중에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매주 한·미 FTA 관련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되는 잘못된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네티즌의 관심어린 질문 등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그 결과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속에서도 전반적인 여론방향은 협상의 중단 여부보다는 협상자체는 대세로 받아들이면서 '얻는 것이 많은 협상', '협상 이후 정

부의 충실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쪽으로 진화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협상이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둔 2007년 3월 말까지 여론은 찬반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2월 말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의견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찬성의견 60.8%, 반대의견 33.0%로 나타나 국민들의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언론은 협상의 핵심쟁점과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들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한미 FTA반대시위와 그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대응, 쇠고기 수입공세에 나선 미국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그러던 중 제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2007년 1월 18일, 프레스인·한겨레가 한미 FTA 6차협상 대응방향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국회 보고자료를 입수하여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협상이 중대한 고비에 이른 시점에서 정부의 협상 전략을 미국측에 노출시킴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언론보도가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였다. 지원위에서도 1월 19일 별도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여 관계부처의 적절한 조치와 해당언론의 분별있는 보도를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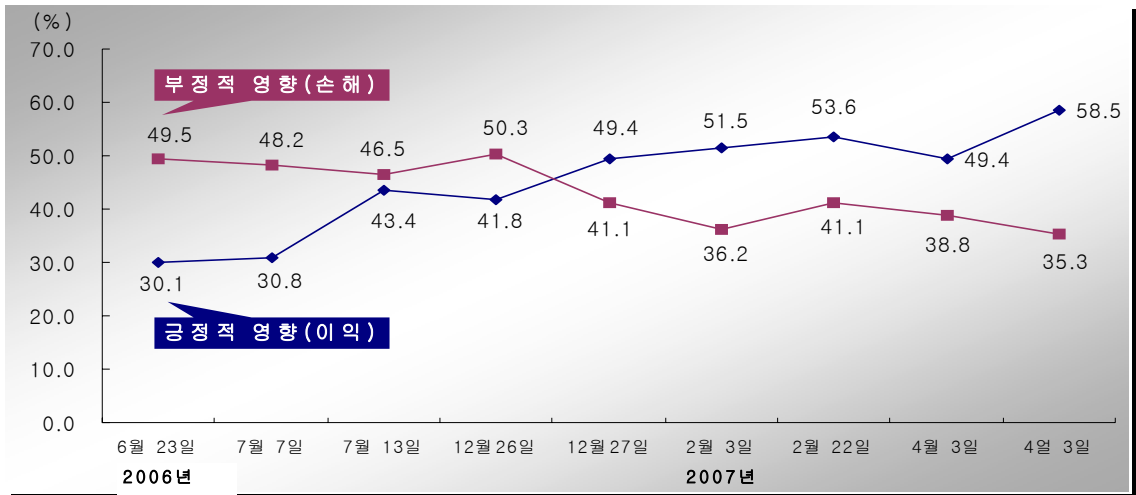
2007년 3월 말 협상타결 시점이 임박하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위시한 반대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거세어졌다. 3월 27일에는 한미 FTA 협상은 불공정·불균형 협상이며,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을 뿌리째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으로 전략하였다고 비판하는 '한미 FTA 졸속타결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선언'이 있었고, 4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협상타결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그날 오후에는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이던 하얏트 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위자가 분신을 하는 등 극단적인 사고도 발생하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사고를 국민의 의사를 배반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돌리며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협상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이 협상이 시작된 후부터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되기까지 찬반 여론의 팽팽한 대립, 부정적인 언론보도, 반대단체들의 조직화된 활동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과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의 한미 FTA 반대입장 표명과 반대운동 참여는 반대단체들에게 새로운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한·미 FTA가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 일해오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반대로 돌리며 자기부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 FTA가 전 산업분야에서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의 안보, 주권,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국민투표로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한·미 FTA는 추진 검토단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들도 이견을 제시했을 정도로 향후 추진단계에서 찬반논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 추진 검토과정에서부터 항상 열린 입장으로 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였으므로 한·미 FTA에 관한 정부의 일관된 협상원칙인 '국익'과 '국민을 위한 주도적 선택'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였다. 그리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도 중요한 문제를 모두 보고받으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다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한·미 FTA의 극적인 타결로 결실을 맺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일부 반대단체의 협상 무효화 요구 및 거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이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 FTA체결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한·미 FTA 체결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현재, 한·미 FTA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3일(재경부), 7월 7일(한길리서치), 7월 13일(리서치앤리서치), 12월26일(서울경제), 12월27일(문화일보)
 <2007년> 2월 3일(한겨레), 2월 22일(무역협회 무역연구소), 4월 3일(SBS), 4월 3일(조선일보)

<그림 7-2 한·미 FTA의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 여론 추이>

라. 협상타결 이후 긍정적 여론의 확산

한·미 FTA 타결 직후 두드러진 특징은 긍정적인 여론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TV나 신문 등 언론의 반응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한·미 FTA 타결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범국본 등 반대단체의 활동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시위 참여 인원도 급감하는 등 반대단체들의 활동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전경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007년 4월 2일~6일) 결과 대기업의 83.7%가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여론조사 결과 중소기업 역시 86%가량이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기업들의 한·미 FTA에 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4월19일~20일)에 따르면 협상 발효시 소비생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6.6%를 차지하였고, 잡코리아의 조사(4월 5일~9일)에서는 58.4%의 기업이 한·미 FTA가 고용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징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넷케이 신문은 4월 2일 '남겨진 일본, 산업계의 초조감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FTA 전략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멕시코의 El Universal은 대미수출에 있어 한국이 멕시코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7년 4월 10일 한국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조기에 FTA를 체결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여론의 확산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협상내용의 측면에서 한미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진행 중에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협상단이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무역구제, 농업 등 핵심쟁점분야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고 의미있는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자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 협상동향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을 들 수 있다. 협상단은 매 협상전후로 대응전략과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으며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는 일반국민, 여론주도층,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상대로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의 주도하에 타결 직후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협상결과 및 향후 정부대책 수립 로드맵을 미리 준비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협상타결 발표이후 국내보완대책 추진계획 발표가 이루어졌고 각 부처별로도 체계적으로 협상결과 설명 및 향후 대책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솔선하여 워크숍을 통해 협상결과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가 개최한 ‘한·미 FTA 지역별 순회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셋째, FTA 체결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선진국의 질주와 개도국의 추격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미 FTA와 같은 FTA의 추진은 장기 지속성장을 위한 좋은 전략적 수단이 됨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07년 5월 6일 한·EU FTA의 공식출범이 있었음에도 반대주장이 잠잠한 것은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공고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타결 직후 우호적 분위기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각계 각층 및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결 직후 협상결과에 대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던 정부활동은 변화하고 있다. 즉, 타결 이후 국회의 원만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국회동의를 위해 협상타결 직후부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제공 및

설명을 진행하였다. 협상 타결 이후 전반적으로 국회·정치권의 한·미 FTA 찬성여론은 증가하였지만 일부 정당 및 국회의원들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반대활동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각 정당은 한·미 FTA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한·미 FTA를 당 차원에서 평가하는 검증활동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고 국회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맞춤형 설명팀'을 구성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도 운영하였다.

또 하나의 활동은 기업 등이 한·미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트가 구축되면 기업 등은 각 정부부처의 한·미 FTA관련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FTA 박람회 등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 4 부 향후 과제

제 8 장 FTA 추진과정에서의 교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한 FTA 협상으로 대내외 협상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해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대내 협상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에게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견수렴과정>

정부가 한·칠레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계를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다. 정부가 농업인단체에게 공식적으로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4월³⁾ 2차 협상이 끝난 직후였다. 물론 정부는 협상이 시작된 후 협상의 중요단계마다 7차례에 걸쳐서 농업인들에게 협상내용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상 추진이 결정되기 이전에 FTA가 미칠 영향이나 정부의 기본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설명절차가 보다 충분했더라면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전후하여 두 차례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로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총 450여 회에 걸친 토론회,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소관 분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는, 2006년 3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여 건의 의견서를 접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농협 조합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농업 분야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측 수석대표는 4차에

3) 2000년 4월은 2차 협상이 끝난 이후인데 이때 까지는 우리의 농산물 관세양허안을 칠레측에 제시하지 않았다. 2000년 4월 농민단체 협의에서 정부는 농산물 관세양허 방향을 설명하고 5월에 있는 3차 협상에서 칠레측에 처음으로 농산물 관세양허안을 제시했다.

서 7차 협상 기간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감귤의 민감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내 감귤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정당의 한·미 FTA 특위 등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총 200여 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민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이를 협상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전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의견 수렴 과정으로서 통상 협상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외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협상 전략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의 내실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통상 협상 과정에서의 범정부적인 의견 수렴 체계와 절차가 아직 정형화되고 정착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한·미 FTA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한·칠레 협상이 종료되고, 2003년 7월 정부는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대책이 없다는 공표를 하고도 농업계와 정치권의 추가대책 요구를 수용하여 이후 추가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하면서 공신력에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인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물리적인 시위를 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무조건 반대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격렬한 반대시위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더 심하게 전개하는 등 농민단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향후 FTA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선례는 협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일본과의 FTA 협상이 중단중이지만, 향후 재개되어 타결될 경우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중소기업들에게도 한·칠레 FTA 농업분야처럼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정부부처간 이견 노출>

중요한 통상문제들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되고 분야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협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많은 부처가 협상에 참여했으며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협상의 주무부서로서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고 농림부는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처이기에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상이 진전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1999년 12월 시작된 한·칠레 FTA 공식 협상은 2000년 말까지 종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 4차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관세안에 대한 우리 정부 내부의 입장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양허안을 제시할 수 없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농산물 관세양허로 인한 갈등은 그후에도 계속돼 2001년 3월로 계획된 5차 협상이 무산되면서 협상은 원동력을 잃고 표류했다.

이후 5차 협상은 2002년 8월에 열렸으므로 4차 협상이후 1년 8개월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4차 협상이후 5차 협상이 열리기까지 정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었다. 결국 5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한 양허안은 협상 초기의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칠레측도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 농업계의 분위기를 인정하고 한국이 제시한 양허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양허안을 조정했다. 칠레와의 협상에서 대외적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부처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당초 제시했던 양허안을 수정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제 9 장 남아있는 과제

1. 한·미 FTA 성공적 발효를 위한 보완대책의 수립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시장개방정책으로서 그 체결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그 이익은 간접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과 이익을 얻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층 혹은 집단 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한·미 FTA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통해 한·미 FTA의 건설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 다음날인 지난 4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내 보완대책은 그동안의 논의경과와 최종 협상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미 FTA 체결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보완대책은 산업별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수입증가(시장개방)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한·미 FTA체결로 많은 부문이 이익을 보거나, 일부 피해가 있는 부문의 경우에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 동시 추진>

농업 부문의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은 크게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소득보전직불금은 수입증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

하여 지급된다. 대상품목은 현행 키위·시설포도(한·칠레 FTA 체결 시 마련)에서 쇠고기·감귤 등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폐업시 과거 3개년간의 순수입액을 보상). 대상품목은 현행 키위·시설포도·복숭아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폐업지원금이 실제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품목 지정과 동시에 발동되어 지원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개방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FTA 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한·칠레 FTA 시 2004~2010년 중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FTA 이행지원기금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추진할 것이다.

축산 분야에서 쇠고기는 광역단위 우수브랜드 육성과 축종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로 수입산과 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 돼지는 축사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를 추진하고, 닭·오리는 포장시 작업장명칭 표시, 사육단계부터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등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낙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원예 분야에서 과실류는 당도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하며, 인삼은 신품종 개발, 기계화율 제고와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용 콩과 감자 등 곡물 분야에서는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력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에 조성된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재조정하여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난 2004년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사업의 재조정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업 부문의 경우 농업의 경우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즉, 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품목과 지급요건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겠지만, 명태·민어 등의 품목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수산발전기금

(2007년 기금예산에 유통가공시설 개선 등 6천억원 기 반영)을 확충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수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명태·민어 등 원양트롤업종의 설비 현대화와 공동 운반·판매·마케팅 지원 전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고등어·오징어 등 연근해업종에 대한 유통시스템 개선, 선상포장·가공 기술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넙치 등 양식업종에 대하여는 운반시설 현대화와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기존 12조4천억원의 투융자계획을 조정하여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수산업 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미 마련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사업도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하여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와 더불어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 51개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는 지원대상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2007년 4월 29일 시행)」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서비스, 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Negative list)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이미 개방된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 업종 등은 실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과 유희설비 매각 알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무역조정기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서비스업 영위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무역조정 종합대책'을 2007년 6월까지 마련하

고 하반기 중에는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하여 지방노동청의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시장 '맞춤형 지원' 으로 뚫는다>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2006년 기준 경상 GDP 13.2조, 수입규모 1.8조달러)인 미국에 대한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요 수혜예상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픽업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고, 섬유류의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하여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체 간 협업지원을 확대하며 패션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전자 부문은 반도체장비 등 미국 측의 경쟁우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협력도 강화해 나가며, 신발 등 생활용품은 미국 내 메이저업체와의 마케팅 협력 강화, 기획제안형(ODM) 생산체제 강화와 중소기업 해외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사화, 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뉴욕 무역관내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진출 촉진을 위하여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하고, 군수를 제외한 시장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국제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한류의 지속 확대를 위해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마케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와 폭넓은 규제완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선진화 방안은 '제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최종협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소요 반영과 관련된 절차 등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대신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2.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반드시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장기비전 하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 점진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야 할 분야를 설정하고,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직접적인 보상보다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촉진 등 간접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는 향후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법·제도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개방 정책이란 본래 추진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이익은 광범위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직접적 수혜를 받는 산업부문은 피해계층에 대한 눈치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찬반 여론이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바탕으로 FTA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수렴이나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필수적이다. 개방정책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므로 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부 록

별첨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시장 (Common Market)
-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⁴⁾하고 있다(상품

4)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

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

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현재 세계 총무역규모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 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②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③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④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⑤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⑥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2. FTA별 추진일지

(1) 한-칠레 FTA 일지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1998.11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 1999.4월, 6월 고위작업반회의 개최(서울, 산티아고)
- 1999.9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
- 1999.12.14-17 제 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2.29-3.3 2차 협상 개최(서울)
- 2000.5.16-19 제 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11.14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 2000.12.12-15 제 4차 협상개최(서울)
- 2001.6월,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외무장관, 협상 재개 합의
- 2001.10월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조기 타결 입장 확인
- 2002.2.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 2002.8.20-23 제 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
-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
- 2002.10.18-20 제 6차 협상 개최(제네바)
-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 2003.2.15 정식 서명(서울)
- 2003.7.8 우리측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2003.12.26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통과
- 2004.2.16 국회 본회의 통과
- 2004.4.1 발효
- 2004.6.10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제 1차 자유무역위원회(FTC : Free Trade Commission) 개최(산티아고)
- 2004.9.16-17 2개 산하위원회(제1차 상품무역위원회, 제1차 투자 및 국경간서비스위원회) 개최(L.A.)
- 2004.11.12 제1차 기술표준위원회 개최(서울)
- 2005.4.18 제1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SPS위원회) 개최(서울)
- 2005.5.31 제2차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개최(서울)

- 2005.6.1 제2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서울)
- 2005.6.3 제2차 자유무역위원회(FTC : Free Trade Commission) 개최(제주)
- 2006.11.3 제3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산티에고)
- 2007.1.29 제2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SPS위원회) 개최(산티아고)

(2) 한-싱가포르 FTA 일지

- 1999.9 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고축통 총리, 한국-싱가포르-칠레 간 FTA 체결 제의 이래 수시로 제안
- 2002.10.1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싱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 2002.11.14 한·싱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
- 2003.3.4-6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서울)
- 2003.7.29-30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 (싱가포르)
- 2003.9.4-5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 (서울)
- 2003.10.7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6개월간의 활동 종료 후, 조속한 정부간 협상 개시를 건의하는 보고서 제출
- 2003.10.23 싱가포르 국민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초 협상을 개시,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 2004.1.27-29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3.24-26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4.5.19-21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7.21-23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2004.9.7-9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10.4-8 제 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10.28-29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11.29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싱 정상회의시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2005.4.16 협정문안확정, 가서명(싱가폴)
- 2005.8.4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문 정식서명 (서울)
- 2005.8.24 국회비준동의안 제출
- 2005.12.1 한-싱가포르 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 2006.3.2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3) 한-EFTA FTA 일지

- 2004.5.14 OECD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시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2004.8.11-13 한·EFTA FTA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제네바)
- 2004.10.13-15 한·EFTA FTA 공동연구 제2차회의 개최(서울)
- 2004.11.12 한·EFTA FTA 공청회 개최(서울 무역센터)
- 2004.11.12 한·EFTA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12.16 한·EFTA FTA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제네바)
- 2005.1.18-21 한·EFTA FTA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 2005.4.4-8 한·EFTA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5.30-6.2 한·EFTA FTA 제3차 협상 개최(노르웨이)
- 2005.7.4-8 한·EFTA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5.7.12 한·스위스 양자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타결 선언(중국대련)
- 2005.9.13 한·EFTA FTA 가서명(제네바)
- 2005.12.15 한·EFTA FTA 정식서명(홍콩)
- 2006.6.30 한-EFTA FTA 협정 국회 비준통과

- 2006.9.1 한-EFTA FTA 협정 발효

(4) 한-일본 FTA 일지

- 1998.11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 1998.12-20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행
- 2000.5.24 한-일 FTA 심포지엄(서울)
 -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 2000.9.23 양국정상,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 수렴 목적을 위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를 합의(일본)
- 2000.9.28 한-일 FTA 심포지엄(동경)
 -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 2001.5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
 - 한국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일본: 우시오전기 회장
- 2001.9.7-8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2002.1.25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2차 회의 개최(동경)
 - 양국 FTA의 조기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발표
- 2002.2.27 한-일 FTA 관련 세미나 개최(조선호텔)
- 2002.3.22 양국정상,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를 합의
- 2002.6.27 한일 FTA 세미나 개최(서울)

- 2002.7.9-10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서울)
- 2002.10.1-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동경)
- 2002.12.4-5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부산)
- 2003.2.6-7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4차 회의(동경)
- 2003.4.14-15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5차 회의(서울)
- 2003.5.22 한일 FTA 종합토론회(코엑스)
- 2003.6.7 노무현 대통령 방일시, 조속한 시일내에 한일 FTA 협상개시에 합의
- 2003.7.11-1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6차 회의(일본 후쿠오카)
- 2003.9.2-3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7차 회의(서울)
- 2003.9.19 한일 FTA 공동연구회 최종 보고서 문안 협의(동경)
- 2003.9.30 한일 FTA 세미나(전경련회관)
- 2003.10.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 회의 및 최종보고서 채택(서울)
- 2003.10.20 양국정상, 정부간 공식 협상개시 합의(방콕)
- 2003.12.22 한일 FTA 제1차 협상(서울)
- 2004.2.23-25 한일 FTA 제2차 협상(동경)

- 2004.4.26-28 한일 FTA 제3차 협상(서울)
- 2004.6.23-25 한일 FTA 제4차 협상(동경)
- 2004.8.23-25 한일 FTA 제5차 협상(경주)
- 2004.9.1, 9.4 한일 FTA, 중소기업지방설명회(광주, 대전)
- 2004.11.1-3 한일 FTA 제 6차 협상(동경)

(5) 한-ASEAN FTA 일지

- 2003.8.3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
- 2003.10.8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 2004.2.13 SEOM+1 회의(캄보디아)에서 전문가 그룹 운영에 관한 terms of
reference(TOR) 확정
 - 아울러 ASEAN측 간사국으로 싱가포르가 지정
- 2004.2 전문가그룹 구성 및 상호 통보
 - 1차 회의에 대비, 의제(안) 발굴 및 ASEAN측 제도와 관행에 관한 질문서 준
비, 사전 전달
- 2004.3.8-3.9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 논의내용 : FTA 협상 적용범위, 협상 방식, 공동보고서 작성 절차 및 시한 등
향후 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2004.4.16-4.17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 논의내용 : 한·아세안 무역·투자현황에 대한 개황 및 평가, 한·아세안 경제협

력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점검 및 이에 대한 양측
입장 교환

- 2004.6.10-6.11 제3차 전문가회의 개최(싱가포르)
 - 논의내용 : 양측간 무역 자유화·원활화 및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 한·아세안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 교환, 그 동안 양측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검토
- 2004.7.9-7.10 제4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 논의내용 : 보고서 미진분야 논의
- 2004.8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 보고서 최종확정 및 FTA 추진을 양측 정상에게 건의키로 결정
- 2004.8.4 한-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8.21 FTA 실무조정회의
- 2004.9.4 AEM+1에서 공동연구결과 승인 및 정상에게 공식협상 개시 건의
- 2004.11.6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4.11.30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선언
- 2005.2.23-25 제1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5.4.19-21 제2차협상 개최(서울)
- 2005.6.8-10 제3차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7.19-20 제4차협상 개최(방콕)
- 2005.9.6-9 제5차협상 개최(서울)
- 2005.9.23 제6차협상 개최(라오스)
- 2005.9.28 한-ASEAN 통상장관회의(라오스) 개최
- 2005.9.29 제2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
- 2005.10.11-14 제7차협상 개최(베트남)
- 2005.11.16 APEC 계기 한-ASEAN 통상장관회의(부산) 개최
- 2005.11.24-25 제8차협상 개최(쿠알라룸푸르)
- 2005.12.9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 2005.12.13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 2006.2.4-7 제9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6.3.6-10 제10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6.4.23-28 제11차협상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 타결
- 2006.5.22-26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7.3-7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06.8.24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쿠알라룸푸르)
 - 한-ASEAN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별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
- 2006.9.18-22 제14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 2006.10.31-11.3 제15차 협상 개최(브루나이 다루살람)
- 2007.1.31-2.2 제16차 협상 개최(미얀마 만달레이)
- 2007.4.8-13 제17차 협상 개최(서울)

(6) 한-멕시코 FTA 일지

- 2000.5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민간협력 강화, 투자 보장협정 체결 FTA 연구라는 3단계 FTA 추진방안합의
- 2000.11 투자보장협정 서명(2002.8 발효)
- 2002.7 제6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FTA개별 타당성 연구합의
- 2003.5 우리측 연구결과에 대한 멕시코 현지 설명회 개최
- 2003.11 고건 총리 Fox대통령 예방계기 FTA 공동연구 실시 제의
- 2003.11 멕시코 FTA 모라토리움 선언
- 2004.4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 (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on the Strengthening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구성 합의

- 2004.5 OECD 각료회의계기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 운영방안 합의
- 2004.10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1차회의 개최(서울)
- 2004.12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2차회의 개최(멕시코)
- 2005.3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3차회의 개최(서울)
- 2005.4 한·멕시코 경제관계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4차 회의 개최(멕시코)
- 2005.6 한·멕시코 경제관계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5차 회의 개최(서울)
- 2005.8 한·멕시코 경제관계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6차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멕시코)
- 2005.8.18 한·멕시코 SEC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5.9.9 한·멕시코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추진 합의(멕시코)
- 2005.11.3~4 한·멕시코 SECA 협상개시 관련 사전준비회의 (멕시코시티)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6.2.7~9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 개최 (서울)
- 2006.4.18~20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개최(멕시코시티)

- 2006.6.14~16 한-멕시코 SECA 제3차 협상 개최(서울)

(7) 한-캐나다 FTA 일지

- 2004.05.10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상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
- 2004.11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협의를 개최 합의
- 2005.01.25~26 1차 예비협의를 개최 (양국의 FTA정책 및 협정문 각 chapter별 구성요소 등에 대해 협의)
- 2005. 3.31~4.1 2차 예비협의를 개최
 -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 2005. 5.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 한-캐나다 FTA 추진에 관한 업계-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 2005. 5.10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한-캐나다 FTA 추진에 관한 업계 및 학계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
- 2005. 5.21 FTA 추진위원회 개최
 -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문제 심의
-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한-캐나다 FTA 협상 공식 출범 승인
- 2005. 6. 1 한-캐나다 통상장관간 전화회담

- 빠른 시일내에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5. 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개최 (중국 대련)
 - 한-캐나다 FTA협상 출범 합의 (7.15 공식 발표)
- 2005. 7.28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 협상 추진일정, 협상분과 등 향후 협상 추진체계/framework 논의
- 2005.9.27~9.30 한-캐나다 FT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 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진행
- 2005.11.28~12.2 한-캐나다 FTA 제3차 협상 개최 (오타와)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 분야별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분야
 - 양허방식(modality)에 대한 논의 진행
- 2006.2.13-17 한-캐나다 FT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분야별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진행 및 상품분야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품목 목록 교환
- 2006.4.24~27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개최 (오타와)
 - 양측간에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유보안이 교환됨으로써 실질적인 양허협상 개시, 분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 지속
- 2006.6.26~29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 상품양허안에 대한 request를 교환, 양허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 및 분과별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
- 2006.9.25~28 한-캐나다 FTA 제7차 협상 개최 (오타와)

- o 2006.11.20~28 한-캐나다 FTA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 o 2007.1.29~2.2 한-캐나다 FTA 제9차 협상 개최 (밴쿠버)
- o 2007.4.23~26 한-캐나다 FTA 제10차 협상 개최 예정 (서울)

(8) 한-인도 FTA 일지

- o 2003.12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문제 검토기로 합의
- o 2004.04 한-인도 아주국장회의(서울)에서 인도측은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산-관-학 JSG 출범을 제의, 양국간 FTA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 1년 기한의 연구작업 진행 희망
- o 2004.05 대외경제장관회의시 FTA 추진로드맵 보완,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o 2004.08 한-인도 무역공동위(뉴델리) 국장급 실무회담시 별도 FTA JSG 설치안 협의 및 인도측의 한-인도 JSG 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o 2004.10 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민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 인도 JSG 출범 합의,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사항 발표
- * CEPA :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
- o 2005.01.27-28 한-인도 JSG 제1차 회의 개최 (뉴델리)
 - 양국간 CEPA 타당성 검토 문제를 JSG 회의 중점의제로 선정, CEPA 체결 협

상 추진 기반 마련

- 2005.05.19-20 한-인도 JSG 제2차 회의 개최 (서울)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등 부문별 초안검토 및 협의, CEPA 체결 타당성 입증 노력
- 2005.08.10-11 한-인도 JSG 제3차 회의 개최 (뉴델리)
 - 통합보고서 일부(서비스교역, 투자분야) 채택, 상품교역 및 경제협력분야 통합초안 세부 검토, CEPA 추진 심층 협의
- 2005.12.5 한-인도 CEP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6.01.5-6 한-인도 JSG 제4차 회의 개최 (서울)
 - 양국간 CEPA 협상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 공식 채택
 - 양국간 CEPA 협상개시 및 협상추진 방식 잠정합의
- 2006.01.26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6.2.6 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CEPA 협상개시 선언(서울)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최(뉴델리)
 - 협상그룹 구성, 협상문 초안 작성주체 및 제시시기, 향후 협상일정 및 양허안 교환시기등 주요사항 합의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상품분야 양허 방식 및 범위, 원산지 일반규정 및 PSR, 서비스·투자분야 개방 방식 및 NT/MFN 부여 등 협의
-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뉴델리)
 - 상품 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양측 의견 교환
 - 원산지 일반기준 및 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 확인

- 2006.10.10-13 한-인도 C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을 5차 협상에서 교환기로 합의
 - 상품 및 서비스 협정문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도출
- 2007.1.10-12 한-인도 C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자이프르)
 - 합의된 기한내 협상타결 기반 구축
 - 원산지 및 서비스 분야 입장차 지속
- 2007.4.3-6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9) 한-미 FTA 일지

-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이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
-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
-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관련 논의
-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등 양

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정책관련 논의

-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 2006.03.06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 2006.04.17~18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2006.06.27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 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 2006.12.4~8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 2007.1.15~19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2007.2.11~14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2007.3.8~12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2007.4.2 한-미 FTA협상 타결